

제400회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1월7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2)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3)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0)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4)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3)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8)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8)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0)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6)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2)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25)
1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1)
1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9)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03)
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7)
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3)
1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5)
1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0)
2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4)
2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8)
2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2)
2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4)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0)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5)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8)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2)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7)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2)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4)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0)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4)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1)
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9)
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0)
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2)
37.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9)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8)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2)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2)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7)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6)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2)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9)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6)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9)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0)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7)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5)
5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5)
5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4)
5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7)
5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7)
5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9)
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1)
5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
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5)
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0)
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0)
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5)
6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0)
6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5)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3)
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2)
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9)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4)
6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0)
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0)
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9)
7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3)
7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4)
7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7)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3)
7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5)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8)
7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1)
7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2)
78. 미용사법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69)
7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8)
8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4)
8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5)
82.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5)
8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6)
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3)
8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6)
8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0)
8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6)
8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1)
8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2)
9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2)
91. 상담사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6)
9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7)
93.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7)
9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1)
9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0)
9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6)
9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4)
9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4)
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7)
100.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5)
10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
102.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6)
10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2)
104.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3)
105.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4)
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5)
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9)
1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3)
1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6)
1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3)
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8)

1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7)
1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27)
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5)
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0)
1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9)
1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2)
1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7)
1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0)
1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7)
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5)
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9)
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8)
1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4)
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4)
1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0)
1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1)
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1)
1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4)
1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4)
1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2)
1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5)
13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1)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4)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7)
1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4)
1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1)
1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1)
1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7)
1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5)
1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4)
1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9)
14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1)
1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
1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5)
1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2)
1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8)
1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3)
1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2)
1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8)
1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2)
152.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1)
15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4)
15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6)

15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8)
1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9)
15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9)
15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5)
15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7)
16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4)
16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3)
16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4)
16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3)
1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7)
1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6)
1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5)
1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3)
1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6)
1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4)
1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1)
1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9)
17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2)
17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5)
17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5)
17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27)
17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4)
17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4)
17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8)
17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8)
18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0)
18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9)
18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4)
18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8)
18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8)
18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6)
18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5)
18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9)
18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7)
189.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4)
19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6)
191.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9)
192.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7)
19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
19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

19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5)
19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6)
19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6)
1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9)
19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7)
20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0)
201.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강선우 의원 등 178인 발의)(의안번호 2116324)
20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20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보건복지부 소관
204.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9) 철회 동의를 건
205.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상정된 안건

1.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 12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2) ... 42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3) ... 42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0) ... 42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4) ... 42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3) ... 42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8) ... 42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8) ... 42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0) ... 42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6) ... 42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2) ... 42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25) 42
1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1) 42
1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9) 42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03) 42
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7) 42
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3) ... 42
1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5) ... 42
1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0) 42
2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4) 42
2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8) 42

2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2)	42
2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4) ...	42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0)	42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5)	42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8)	42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2)	42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7)	43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2)	43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4)	43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0)	43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4)	43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1)	43
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9)	43
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0)	43
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2)	43
37.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9) ...	43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8)	43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2)	43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2)	43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7)	43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6)	43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2)	43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9)	43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6)	43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9)	43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0)	43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7)	43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5)	43
5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5)	43
5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4)	43
5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7)	43
5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7)	43
5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중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9)	43
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1)	43
5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	43
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5)	43
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0)	43
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0)	43
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5)	43
6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0)	43
6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5)	43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3)	43
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2)	43
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9)	43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4)	43
6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210)	43
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0)	43
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9)	43
7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3)	43
7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4)	43
7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7)	43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3)	44
7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5)	44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8)	44
7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1)	44
7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2)	44
78. 미용사법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69)	44
7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8) ..	44
8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4) ..	44
8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5)	44
82.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5)	44
8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636)	44
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643)	44
8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716)	44
8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720)	44
8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6)	44
8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1)	44
8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2)	44
9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2)	44
91. 상담사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6)	44
9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7)	44
93.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7)	44
9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1)	44
9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0)	44
9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6) ..	44
9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4) ..	44
9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4)	44
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7)	44
100.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5) ..	44
10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	44

102.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6) ...	44
10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2) ...	44
104.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3)	44
105.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4)	44
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5)	44
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9)	44
1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3)	44
1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6)	44
1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3)	44
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8)	44
1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7)	45
1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27)	45
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5)	45
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0)	45
1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9)	45
1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2)	45
1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7)	45
1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0)	45
1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7)	45
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5)	45
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9)	45
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8)	45
1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4)	45
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4)	45
1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0)	45
1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1)	45
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1)	45
1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4)	45
1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4)	45
1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2)	45
1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5)	45
13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1)	45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4)	45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7)	45
1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4)	45
1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1)	45
1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1)	45
1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7)	45
1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5)	45
1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4)	45
1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9)	45
14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1)	45
1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	45
1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5)	45

1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2)	45
1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중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8)	45
1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3)	45
1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2)	45
1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8)	45
1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2)	45
152.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1)	45
15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4)	45
15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중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6)	45
15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8) ...	45
1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9) ...	46
15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9)	46
15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5)	46
15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7)	46
16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4)	46
16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3)	46
16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4)	46
16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3)	46
1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7)	46
1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6)	46
1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5)	46
1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3)	46
1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6)	46
1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4)	46
1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1)	46
1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9)	46
17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2) ...	46
17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5) ...	46
17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5)	46
17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27)	46
17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중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4)	46
17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4)	46
17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8)	46
17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8)	46
18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0)	46
18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9)	46
18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4)	46
18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8)	46
18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8)	46
18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6)	46

18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5)	46
18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9)	46
18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7)	46
189.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4)	46
19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6)	46
191.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9)	46
192.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7)	46
19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	46
19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	46
19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5)	46
19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6)	46
19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6)	47
1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9)	47
19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7)	47
20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0)	47
201.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강선우 의원 등 178인 발의)(의안번호 2116324)	47
20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47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0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47
가. 보건복지부 소관	
204.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9) 철회 동의를 건	82
205.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83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춘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오전에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측의 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참담한 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의미에서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으로 회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법안, 결의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 철회 동의를 건을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

(10시11분)

○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이태원 참사에 관한 현안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규홍 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상자 가족분들은 물론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함께 슬퍼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송구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건복지부의 모든 직원들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충분히 치료받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사고 개요입니다.

지난 29일 22시 15분경에 서울시 용산구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밀집된 대규모 인파가 넘어서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6일 기준으로 모두 백선여섯

분이 돌아가셨고 백아흔일곱 분이 부상을 입으신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백마흔일곱 분이 장례 등 절차가 종료된 상태이고 아직 본국으로 이송 대기 중인 돌아가신 외국인은 아홉 분입니다.

2쪽부터 주요 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응조직 운영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으며 제가 중대본 제2차장으로서 치료 및 장례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 수습에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도 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부터 직원들을 의료기관과 장례식장으로 파견하여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유족들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 의료 지원입니다.

사고 당일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재난의료지원팀 등이 출동하여 현장 응급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우선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게는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배치하여 입퇴원 등의 상황 관리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쪽, 심리지원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유족 등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경찰 등 현장 대응인력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트라우마 극복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마음건강 진단 방법이나 지원 사항에 대한 대국민 안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장례 지원입니다.

유족이 불편하지 않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화장 등 시설 수급 대응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직원을 장례식장마다 배치하여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본국으로 이송 대기 중인 일부 외국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례 진행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유족이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조실 주관 윈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심리 지원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하여 군중 밀집 등 재난에 대비해 응급의료 사전대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소방, 보건소 등과의 합동 현장훈련을 강화하며 재난 응급의료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긴급한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을 계속하면서 인력 조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춘숙 신현영 위원님.

○신현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10월 29일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국심리학회는 지역혐오 방지를 위해 해당 참사를 ‘10·29 참사’로 부르고자 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심리학회의 제안처럼 참사 현장을 직접 목격한 국민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상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회복 중심의 언어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부터라도 사용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아닌 10·29 참사로 명칭할 것을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과 여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그리고 용산보건소장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모바일 정보망인 모바일 상황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를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전 중으로 일체 자료를 의원실로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긴급재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은폐되거나 삭제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즉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曹明姬 위원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의 사고 소식에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사고 수습과 부상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이번 사고에서 1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확인해 보니 사고 현장 근처에 자동제세동기 AED(Artium Elegantium Doctor)가 이태원역 내부 하나, 이태원파출소, 이태원1동 주민센터에 각각 1대씩 해서 총 3대밖에 없었고요 그마저도 주민센터에 있었던 기기는 주민센터 문이 닫혀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장에 도착한 모든 구급차에 AED를 구비하고 있었고 사고 지역 반경 1km 이내에 총 19대가 있었던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曹明姬 위원 그런데 인파가 너무 밀려서 바로 현장에 가기 어려웠겠지요.

사고가 9시에서 6시까지 나인 투 식스(nine to six)에 발생한다는 것도 아닌데 개방된 장소에 비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는 말씀입니다.

○曹明姬 위원 체크해 보니 전국에 비치된 심장 자동제세동기가 5만 5621대라고 하는데요. 이 중의 56%, 그러니까 3만 1339대가 파출소, 보건소, 학교 같은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고 나머지도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의 내부에 있다는데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긴급상황에서는 제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曹明姬 위원 제가 살펴보니 2020년에도 이 문제가 언론의 지적을 받았어요. AED가 설치된 학교의 정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다, 지하철운행을 중단해 출구 셔터를 내려놔서 접근할 수

없었다, 심정지 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평균 10분인데 40분 만에 겨우 발견했다……

장관님, 이때 보완했어도 이번에 수많은 생명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曹明姬 위원 정작 필요할 때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曹明姬 위원 가까운 일본은 지역 내 모든 편의점에 의무로 갖추게 한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AED 설치 의무 장소를 좀 더 확대하고 개방된 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하셔서 의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曹明姬 위원 아울러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사고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 폭·길이는 다 압니다. 그런데 경사각이 5.7도, 경사도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 도로가 경사로가 아니고 평지 같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없었다기보다는 적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 정부가 162조를 들여 가지고 한 디지털 트윈을 좀 더 정밀하게 딱 구축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공유를 해서…… 경찰, 보건·인명과 관계되는 기관에서 그런 데이터를, 다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큰 사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曹明姬 위원 문재인 정부 때 한국판 뉴딜사업 그 일환으로 서울시를 전부 디지털 트윈으로 다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축한 걸 공유하지 않고…… 그건 물론 경찰청도 문제지만, 보건부도 이러한 인명 사고를 대비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인명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 기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가지고 경사로, 입체도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대책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답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활용 방안도 향후 대책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 전합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후 수습을 위해서 애써 주신 보건복지부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및 의료진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응급의료체계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DMAT은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하는 재난의료지원팀입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서너 명으로 구성이 되지요. 재난 현장에서 환자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등 초기 의료지원을 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0월 29일 오후 10시 38분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이태원 참사 발생 정보를 수신을 해서 재난 대응에 나섭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초에는 ‘10명 정도 깔린 듯하다’라는 내용을 119로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여 분이 지난 10시 48분에 ‘환자 15명 이상’으로 정정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은 서울대병원 DMAT팀 출동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DMAT팀이 도착을 해 보니까 사고 규모가 훨씬 컸지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DMAT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서울·경기 전역에서 총 14개 병원 15개 DMAT팀이 출동을 하고요 초기 현장의료 대응에 나섭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 컨트롤타워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됐는지가 굉장히 의문이에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소방당국 또는 행안부로부터 적절한 상황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소방당국은 10시 43분에 대응 1단계, 11시 14분에 2단계, 11시 50분에 3단계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발령 이후에 전국에서 140여 대의 구급차가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11시 50분에는 소방당국이 이태원 참사가 이게 국가적인 대형 재난이다라고

파악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행안부 상황실 역시도 10시 48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참사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당국이 가지고 있던 당시 정보, 행안부가 보고받은 이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1시에 가장 먼저 출동 요청한 서울대병원 DMAT팀 포함해서 총 4팀만 12시 이전에 출동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방당국, 행안부는 11시 50분에는 이걸 파악을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 지역 나머지 11개 팀은 보시면 12시 넘어서야 출동 요청합니다.

현장 도착 시간, 가장 오른쪽 칼럼 보시면 새벽 1시 훨씬 넘어서 그렇게 도착을 하게 돼요. 만약에 소방당국이 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거나 아니면 행안부 상황실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폈고 재난대응단계를 더 빨리 올렸다면 DMAT팀 대응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장관님, 당시에 소방당국이나 행안부로부터 이 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 전달받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 컨트롤타워 간의 정보 공유,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참사 계기로 DMAT 활동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대응단계 발령에 따른 DMAT 자동출동 프로토콜 마련하고요 또 지연환자 병원 이송에 대한 통제 또 재난 현장에서 해당 지역의 보건소장이 지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제고 및 개선점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 역시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지만, 일단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응급상황실은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상황 정보를 공유받고 그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DMAT팀한테 연락을 해서 출동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분에 상황을 공유한 다음부터 DMAT팀 출동 요구

가 있어 가지고 중앙응급상황실에서 1차 DMAT팀 파견을 요청했고 그 이후에도 한 여섯 차례에 걸친 추가 요청에 대응해서 저희도 중앙응급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요청을 받아야 출동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동출동하는 시스템 그것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에서 지휘를 맡고 있는 현장 응급진료소와 DMAT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인력·장비 확충 등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선우 위원 장관님, 119에서 최초로 전달받았을 때 그 내용이, ‘10명 정도 깔린 듯하다’는 내용이 맞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그 숫자 10명 그다음에 10분 후에 15명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 위원 신현영입니다.

장관님, 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재난의료지원팀인 DMAT 파견 지시 있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신현영 위원 몇 시에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00시 06분에 복지부가 응급의료팀을 파견하고 응급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신현영 위원 실제로 대통령이 지시하기 1시간 16분 전인 23시부터 서울대 포함해서 5개 DMAT 출동 요청이 완료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왜 뒷북지시하신 거지요? 제대로 알고 지시한 거 맞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만전을 기하고 확인을 잘 하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신현영 위원 급박한 상황에서 적시에 제대로

되지 않은 지시는 현장의 혼란만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날 행적 보고, 신뢰성이 떨어지는데요.

영상을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실제로 현장에서 뇌진탕 환자 몇 명 발생했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사인을 구분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현영 위원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현장의 응급의료에 대한 가장 컨트롤타워인 장관님께서 그걸 모르신다고 하니, 지금 현 정부의 상황 파악의 안이함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이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그날 대통령님을 수행하지 않아서 어떤 맥락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말씀에 대해서……

○신현영 위원 사고 당시 23시 36분부터 시작해서 7차 지시를 대통령께서 하셨다는데 누구보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많은 정보 가지고 계실 것이거든요. 현장 상황 너무 모르시고 부적절하게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0시 16분에 응급병상 확보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지시 1시간 이후에 확보된 중환자 병상, 8개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복구가 빨라서 중환자가 속출했다 그랬다면 이거 감당 가능했을까요?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때 이미 22시 38분부터……

○신현영 위원 중환자 병상 확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22시 38분부터 중앙응급상황실에서 가용병상 정보를 모바일 상황판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중환자 그다음에 경환자……

○신현영 위원 장관님, 그 방식은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초반에 중환자 병상 확보가 8개밖에 안 됐던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 중환자가 속출했다, 만약에 이번에 사망자가 중환자로 빠르게 복구가 됐을 때 8개밖에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것은 확보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송 거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영 위원 장관님 현장에 계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신현영 위원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모바일 상황실 포함해서 자료 요청을 해도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같이 국민으로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원본 그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 참사에서 의료대응단계가 몇 시에 무엇이 발령됐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22시 38분에 코드 엘로가 발령이 됐고 22시 48분에는 코드 오렌지 발령에 준하는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 코드 발령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것은 중앙응급상황실이 현장 긴급구조통제단 그다음에 현장 응급의료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건 아는데요 장관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적절했다고 보시는 건지. 장관님은 상황실에서 하는 대로 끌려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의 시정에 대한, 그런 제도개선에 대한 의식이 있으신 분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봐야지,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 현장 상황을……

○신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그게 적절했는지 장관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10시 15분에 신고가 들어왔고 38분에 첫 번째로 엘로 코드가 발령된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는 중앙응급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발생하면 15분에 사건이 그렇게,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10분 후에 엘로 발령하고 20분 후에 오렌지 해 갖고 그때야 응급 DMAT팀 요청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응급상황실도 자체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런 발령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정보 제공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중앙응급상황실의 발령이 적절했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검토한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이 9일째입니다. 156명의 젊은이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일 국가 애도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애도기간 중에 많은 국민들께서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부상자들은 현장에서 손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귀가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멍이 들었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최연숙 위원** 사고 현장에서 오랜 시간 강한 압박을 받게 되면 조직, 근육, 혈관, 신경 등의 압박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가 심한 손상을 받게 되고 심하면 세포가 괴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혈액이 고이게 되는데요.

응급처치 없이 압박 원인을 제거하는 순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독소가 몸에 퍼지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정맥이라든지 급성 심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멍이 든 정도가 가볍게 보이더라도 내부 장기출혈이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최연숙 위원** 파악된 부상자 외에도 이렇게 파악되지 않은 압박 부상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고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상자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계도 잡히고 치료비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해서 그날 응급실에 가지 않고 바로 귀가하신 분들이라도 저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치료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연숙 위원**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신고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신 분들에 대한 부상자들의 손상, 부상 정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부상 경과에 대해서 한 달간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안내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원칙적으로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는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장관님, 지난 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결과 설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향후 대응 방향에서 복지부를 제외한 지자체, 경찰청 등에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안내를 지원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배치해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현재 유가족 및 환자 측에서 담당자가 어떻게 배치되고 있고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일단 애도기간 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대일 매칭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저희 복지부가 일대일 매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일차적으로 지자체가 맡고 저희 복지부는 부상자 그다음에 트라우마 심리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연숙 위원** 지금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족이라든지 부상자분들이, 지자체에도 담당자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나가 있고 경찰청에서도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루트를 통해야지만 정확하게 내 의사가 전달이 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최연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즉각 행정에 대한 일원화를 하시고 복지부는 장관님 말씀대로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은 복지부 공무원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재난상황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교육받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보다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나가 있지만 전문가들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전문적인 조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150명의 학생들이 참변을 당한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이태원 참변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이태원사고수습본부장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고영인 위원** 장관님은 그날 이번 참사는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는 30일 날 00시 56분에 보고를 받았고요. 제 보고받은 것하고 상관없이 저희 보건 당국의 응급의료 대응체계는 그 전날 22시 38분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고영인 위원** 아니, 이 정도의 사건, 참변이 일어났는데 지금 사고수습본부장이 그날도 아니고 다음날 50분에 보고받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는 원래 선 조치 후 보고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선 담당 과장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매뉴얼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했었고요, 저는 그 이후에 제1차관으로부터……

○**고영인 위원** 아니, 사안에 따라서,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게 선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것을 당연히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1분 1초 단위로 지침을 내려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장의료 대응은 현장에 나가 있는 보건소장 지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인 위원** 아니, 지금 총리나 행안부장관의 그 책임 회피성 이런 것들을 지금 여실히 보고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하늘을 치솟을 듯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면서 장관님까지 지금 여기서 자꾸 방어를 치려고 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요, 저는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기본자세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음날 50분에 보고를 받고 그게 별문제 없다는 듯이, 지금 그런 태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선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이런 참변에 대해서 사고수습본부장이 그 시간에 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개선방안 만들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이번 참사에서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가장 중점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일단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의료 대응이고요, 지금 이후에는 부상자 치료와 사망자·부상자 가족들의 심리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영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장례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부상자 치료가 중요하고, 특히 제가 세월호 사건을 그동안 지켜본 과정에서 보면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심리적 그다음에 물리적…… 심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 보면요 치아가 다

빠진다는지 엄청난 물리적 후폭풍이 옵니다, 트라우마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와 심리적·안정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트라우마센터를 비롯해서.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일대일 매칭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철저히 가족에 대해서 일대일 매칭이 이루어져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이번에 사고 현장에서, 특히 순천향병원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사망자만 보내고 한 20km 이상 있는 데는 부상자가 그렇게 가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거라는 이 의구심,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그것을 제가 알아본 바로……

○고영인 위원 그것은 시간관계상 이따가 끝에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3일 날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담회를 했고 앞으로 환자 구조·분류·처치·이송 과정 이러한 것들을 재연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는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말씀……

○고영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7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인력 증원 요청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센터를 포함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 부서에 총 33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1분만 좀 더 부탁드립니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후속적으로 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공공병원들이 10%도 안 되는 병원 의료인력 가지고 전체 코로나 환자의 80%를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인력 증원 요구도 묵살된 데다가 게다가 증원은 커녕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부서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잠시 써먹고 토사구팽하고 공공의료가 중요한 이 시기

에,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일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경시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감축하려고 했던 것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 증원 요구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응급상황실의 인력 확충 그리고 응급 대응인력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순천향대병원에 응급환자를 못받고 사망자들만 집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파악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시 36분, 사고 당일 날 순천향병원에는 최초 4명의 CPR 중환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천향대 응급실의 병상 그다음에 역량 등을 감안했을 때는 최대치가 일단 이송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76구의 시신이 순천향병원에 몰려 가지고 영안실과 복도를 가득 메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순천향병원의 중환자 응급치료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하여간 후속적인 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다시 한번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아까 10시 38분, 그러니까 전일 22시 38분에 장관님 보고와 상관없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작동이 시작됐고,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민석 위원 그리고 그다음 날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0시 56분, 그다음에 아까 신현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지시를 받은 것이 0시 16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00시 06분입니다.

○김민석 위원 00시 06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민석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질문이 좀 있는데, 하나는 0시 56분에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전에 0시 06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지시를 받으신 이후에 장관님께서 취하신 조치라든가 지시는 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00시 06분에 대통령께서 복지부에 이후 지시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사회수석으로부터 옆에 있는 2차관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미리 전달을 받아 가지고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00시 56분에 제1차관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것 있고 그 전에 사회수석으로부터 2차관이 전화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으신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과장을 통해서 직접 들으신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늦은 0시 56분이네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물론 그 전에 중앙의료상황실에 22시 38분부터 움직이긴 했는데……

또 하나, 이게 재난의료지원팀이 권역별 DMAT가 있고 중앙 DMAT가 움직이는데 이 재난의 상황은 지금 중앙 DMAT가 움직일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것도 역시 현장 상황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중앙 DMAT는 거의 병원 전체가 움직이는 건데 물리적인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판단에 따라 가지고 권역별 DMAT 15개 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것은 중앙 DMAT가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현장 판단에 따라서 권역별 DMAT가 움직일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민석 위원 정상적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들, 온 국민이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가령 지자체를 통해서 올라가든가 또는 소방청에서 행안부 라인을 통해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나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전체로 통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정보의 유통이 빨리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직접적인 보고를 받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거의 2시간의 격차가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고 보고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적절하기는 22시 50분에 저희 복지부의 응급의료과장이 상황을 인지할 때 아마 위로 올라가서……

○김민석 위원 그때 보고가 안 된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보고하는 것을 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그 당시 사고 규모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의료과장이 상황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김민석 위원 뭐 그 부분은 하여간 우리가 더 판단을 해 보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중앙응급상황실에 돌아가는 걸 먼저 체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마 보건소장이 현장에서 현장 지휘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실로 이송 결정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수용 능력이 없는 곳으로 보내서 기다렸다가 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래는……

○김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 없었다 그것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번에 응급의료를 하는데 있어 갖고는 지장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

○김민석 위원 아니, 이송 배치, 이송을 했는데, 미리 이송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실제로 처치가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보도가 틀린 거예요? 확실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민석 위원 그것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민석 위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먼저 돌아가신 분을 깊이 애도하고 유족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를 드리고 부상자들의 신속한 건강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다음, 사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활동을 해 주신 소방, 경찰, 일반 국민, 외국인까지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입법기관으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입법 정책 활동의 미진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회가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의합니다.

저는 지난 3일 날 밤 10시 넘어서 혼자서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어서 현장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여기에서, 이 개방된 공간에서 어쩌면 이렇게 많은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나…… 참으로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길을 걸어서 옆쪽으로 골목길로 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일반적으로 T자형 도로라고 불리는데 제가 볼 때는 H로 보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과 위에 긴 골목이 연결된 그런 골목인데 그날 정말 빼곡한 인파가 곳곳에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래에서는 이 처참한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상황 인식을 못 해서 또 밀려 내려오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마 구조현장에서는 몹시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도 다음 날 1시 40분경에 그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 좁은 공간에 사상자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응급의료 대응이나 그런 것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됐고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스러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상황을 가장 빨리 인식한 112·119, 이 유관기관 모두가 신속하게 긴밀히 대응하고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번

에는 이것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현 상황에서……

○김미애 위원 이미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그런 게 밝혀지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미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어땠는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서울대 재난의료지원팀이 한 11시 20분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11시 20분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지난 3일에 간담회를 거쳤고 거기에서는 여러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환자 구조·분류·처치·이송 과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선 의견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우선 그때 DMAT팀이 몇 분 오서 가지고 같이 간담을 했는데 가장 많이 제기하신 것들이 현장에서의 현장응급의료 소장과 DMAT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소장이 전체를 다 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권한 위임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출동은 빨리했는데 돌아 돌아 감에 따라 도착이 늦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얘기고 또 장기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별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 언론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가, 가장 먼저 도착한 서울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이 사고 발생 후 1시간 지나 11시 20분이다. 둘째는 소생 가능성 있는 환자를 먼 병원에 보내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을 가까운 병원에 보내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셋째는 심정지 상태의 다수 환자가 분산되지 못하고 특정 병원인 순천향대병원에 몰려서 치료 적기를 상실했다 이런 겁니다.

DMAT 요청 절차는 간소화 등의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언론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알기로는 23시 20분에 서울대병원 DMAT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긴급구조통제단이 현장 임시의료소를 설치해서 응급처치는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송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긴급·응급·비응급 그다음에 지연 환자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현장 응급의료소 인근에 임시 영안소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워낙 사망자가 많아서 가지고 그걸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순천향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송 과정과 이송을 한 후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응급환자·중환자·경환자의 응급의료 대응에 지장은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마련한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10·29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하겠다는 마음의 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지역구인 목포에 거주지를 둔 두 분과 부모님이 목포에 거주하는 한 분이 이번 10·29 참사로 희생되어 더욱 먹먹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또 무너진 것이어서 더욱 슬픔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112에 신고한, 그 신고만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이고 참사여서 그런 점에서 더욱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현장에 있던 시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이번에 정신건강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원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세우고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가 매우 중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조치 중에서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위로와 사과,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대통령의 사과가 결국 오늘 아침에서야 있었지요, 공식적인 사과가.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 이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특히 이런 트라우마 문제라든지 이런 대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직접 보고하신 적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직접 보고한 적은 없지만 중대본을 통해 가지고 매일 저희가 국무총리께 보고를 하면 중대본에서……

○김원이 위원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중대본의 본부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이 사안은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런 조언이나 의견을 낸 적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의견 낸 적 없습니다.

○김원이 위원 저는 장관의 역할이 그냥 단순히 어떤 정책 잘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과 이 민심의 요구를 잘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대통령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조언하고 함께하는 것도 사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단 한 번의…… 그 참사의 주요 책무를 담당한 장관이 따로 개인 보고 한 번, 직접 보고 한 번 없었고 또 그런 어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조언한 바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워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 말고 다른 참모들께서 보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이 위원 다른 참모들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1명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참사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다음에 중요한 게 보건복지부장관 아니겠어요?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원이 위원 다른 어떤 그 누구한테 미룰 수 없는 본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원이 위원 그런데 그런 책무를 다했는지, 대통령하고 그런 소통 하면서 그런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는지 사실은 저는 본인 스스로 좀 느

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미흡한 점이 많았겠지만 앞으로도 치료와 그다음에 심리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드리면서요.

몇 분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고, 이게 한겨레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9일 밤 11시 15분부터 30일 아침 6시 5분까지 병원에 이송된 사상자가 198명입니다, 그렇지요? 그 198명을 분석해 봤더니 사망과 심정지에 이른 사람들 그리고 경증 환자를 제외하고 의식장애가 6명, 호흡곤란이 3명, 실신이 6명, 마비 7명, 과호흡 1명, 그래서 이른바 중증환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약 한 20~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분들 중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도 꽤 많아요, 결국 골든타임 놓쳐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봤더니 거의 대부분 100%가, 이 스물몇 명이 다 6km에서 27km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해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원이 위원** 그리고 반면 가장 가까운, 이 참사 현장하고 가장 가까웠던 순천향대병원에는 52명이 갔는데 이미 사망하신 분 열네 분, 심정지 서른일곱 분 그리고 골반 등 통증을 호소한 사람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미 사실상 죽음에, 사망에 가까운 환자가 거의 대부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간 꼴이 되어 버렸어요.

아까 장관님도, 매뉴얼에 따르면 긴급·응급·비응급·사망순으로 근거리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증환자는 근거리 종합병원으로 그리고 경증환자는 원거리 의료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고 사실상 사망은, 사망에 이른 사람은 이 이송 환자의 기준에 빠져 있어요, 매뉴얼에. 무슨 얘기냐 하면 살릴 가능성이, 생존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 중심으로 매뉴얼이 짜져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지켜졌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리 이송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병원의 수용 능력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CPR 환자 1명에 의료진이 한 5명이 붙어야 됩니다.

○**김원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천향대병원으로 간, 예를 들어서 이미 사망하신 분 열네 분, 심정지 서른일곱 분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의료진이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상태는 이미 생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걸 파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순천향병원에는 23시 36분에 4명의 CPR 환자가 도착을 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자 1명에 5명의 의료진이 필요하니까 제가 보기는 순천향대병원 응급의 역량을 감안할 때 최대치가 간 거고요. 이와 별도로 76구의 시체가 운구된 것……

○**김원이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119 구급대 현황이에요. 119에 실려 가신 분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응급실에 있는 분 현황이 아니고 119를 통해서, 119는 가면서 이미 현황 파악을 하잖아요. 거기에 환자 몇 명 있고 지금 119에 실려 가고 있는 환자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소통하게 되어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미 사망했거나 심정지에 이른 사람들을 왜 순천향으로 모셨느냐 이거지요. 그분들은 좀 원거리로 빼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

물론 이미 응급센터나 이런 데 이미 포화 상태였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이번 10·29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상과 경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이번에 10·29 참사로 백오십육 분이 희생이 되었는데요. 사인을 아직 보고 못 받으셨나요? 모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개별적인 사인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남인순 위원 국과수에서 이 대규모 인파가 넘 어지면서 압착성 질식사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 들어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건 들었는데 백오십 육 분……

○남인순 위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어 쨌든 그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다음날 대국민 담 화를 발표한 직후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던 말이야?’라고 물으 면서 관계자들의 설명에 ‘압사?’라고 물음표를 하고 ‘너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진탕으로 사망하신 분 그 개별 156명 중에 있는 것 파악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그리고 30날 새벽 2시 반에 중대 본이 가동되는 서울청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참가했습니다.

○남인순 위원 긴급상황점검에 참여했는데 희생 자들의 사인이 뭔지를 그때도 보고가 안 됐습니 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때는……

○남인순 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송 환자의 사인에 대한 보고나 논의는 없었고요.

○남인순 위원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고요 대통 령한테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 데, 특히 지금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중 앙의료상황실로부터 복지부도 보고를 받게 돼 있 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그런데 보고받은 시간이, 아까 보니까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대응을 한 것은 29 일 날 11시 38분이었고요. 장관이 보고를 받은 건 그다음 날 0시 56분이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남인순 위원 약 1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 중앙응급상황실에서 복지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 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는 도대체 누구입 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재난 현장의 컨트롤타 워는 긴급구조통제단장……

○남인순 위원 그게 누구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서장이……

○남인순 위원 소방서장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그러면 현장 응급의료소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응급의료소는 소방서 장의 통제에 현지 보건소장이 담당……

○남인순 위원 보건소장이 하게 돼 있는데 보건 소장이 그때 여러 가지 환자들에 대한 분리와 이 송과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 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같이 출동하 는 신속 대응반하고 DMAT팀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장관한테 보고를 한 것도 30일 0시 56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지금 시스템에 의 해서도 장관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복지 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는데 거의 1시간 반 지나서 장관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 한 대응지침을…… 물론 현장에서 보건소장이 했 겠지요.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요, 이게 지금. 이 체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 련해 주세요. 이거는 재난 응급 현장의 컨트롤타 워로서 그냥 용산 보건소장한테 맡길 일이 아닙 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그게 보건소 장에게 다 맡긴 게 아니고요. 저희도 22시 50분 부터 관련 과장이……

○남인순 위원 누가 했어요?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요? 보건소장 말고 누가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요. 현장 응급대 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보건소장이 맞고요. 저 희가 담당하는 거는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했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모니터링하고요?

○남인순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거는 저희 응급의료 과장이……

○**남인순 위원** 과장이 옆에서 같이 한 거예요, 보건소장이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 과장은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모바일 상황판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바일로 상황 받아 가지고 현장 통제가 되겠냐고요. 그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런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정말 안이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서서 응급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응급의료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그때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 게 11시에서 11시 15분 사이에 주변 의료기관에 사실은 고작 4명이었어요, 11시에서 11시 15분 사이.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확보가 돼서 한 2시간 가까이 중환자 20명 치료를 위한 의료 자원 정도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무슨 응급의료에 지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상황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데 응급의료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시간 가까이 파악한 자원도 20명 정도밖에 치료할 수 있는, 병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중환자가. 그렇게 상황 인식을 해 가지고는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안이한 거고요.

위원님들이 심리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에 20대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 배우자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6개월로 한도 둔 것 그건 안 됩니다. 끝까지 후유장애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6개월이라고 하는 제한을 두지 마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희가 발표한 게

원칙적으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전 기간인데……

○**남인순 위원** 아니, 그런데 6개월 지원 후에 그걸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6개월에 한 번 리뷰를 하겠다는 얘기지……

○**남인순 위원** 제한을 두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발표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리고 일대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유가족들과 소통을 해 보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빨리 파악해서 가지고 조속하게 일대일 맞춤형, 심리지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후유장애,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구를 하겠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가족 일대일 지원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상자에 대한 일대일 매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대일 매칭에 문제점이 없는지 같이 지자체와 협의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복지부에서 안 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남인순 위원** 그거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지자체에만 넘길 문제는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부상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유족, 부상자들의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제까지 대면·비대면 심리지원 건수는 몇 건 정도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심리지원을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어제 18시 기준으로 대면 상담이 총 412건, 비대면 상담이 161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기간을 좀 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종헌 위원 지난 4일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단체 성명서를 보면 현재 통합심리지원단으로는 심리지원 수요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발표했고 통합심리지원단의 운영 실태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장관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은 저희 통합심리지원단의 수용 능력을 초과해 가지고 심리지원이 요청되고 그런 거는 아닌데 앞으로 폭증할 것을 대비해서 또 행안부에도 심리센터가 있습니다. 행안부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심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서울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6개 정도 심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유족과 부상자 그리고 국민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다음,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동심장충격기 질의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자동심장충격기가 반경 500m에 세 대뿐이 없었고 한 대는 주민센터 또 실체는 두 대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는 해당 시설 내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만 대규모 모임 장소는 의무 설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법령은 미국, 대만, 싱가포르 정도만 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

르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는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자세히 규정돼 있고 대규모 모임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도 평소에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의무 설치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백종헌 위원 검토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도 중요하지만 접근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마지막으로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타까운 이번 사고 당시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외 처치 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워낙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지난 3일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에서 재난의료지원팀과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직접 간담회를 주재를 했습니다.

○백종헌 위원 주재하셨는데 전문가들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등 이번 참사 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좀 아쉬운 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원활한 소통 그다음에 적절한 위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임시 영안소의 빠른 지정과 확보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제도적으로는 유관기관 간의 사전 정보 공유 그다음에 합동 현장 훈련, 장비·인력 보강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모두 모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간담회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이 환자 구조와 분류, 처치·이송 과정에서 더 효율

적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점도 제안했는데 그런 개선점이 어떤 개선점이었고 거기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이 앞으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날 간담회가 길지 않아서 그렇게 자세하게 깊게 토론하지는 못했는데 환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이 모두 현장 응급 의료소장인 보건소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위낙 사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DMAT 전문가에게 일정 권한이 위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유가족과 부상자 등 이번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부가 최선의 지원을 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희생된 백오십육 분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현재 치료 중에 있는 196명의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로 민의의 전당에 선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도 느낍니다.

저희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서 또 보건복지 위원으로서 좀 더 예방적이고 면밀한 의정활동을 행정부와 함께 해야 되겠다는 깊은 책임감도 느낍니다. 부디 오늘 현안보고가 무의미한 정쟁과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실질적인 긴급대책을 진지하게 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관님, 복지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면서 의료 지원, 심리지원, 장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서정숙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재난피해자 정신질환 발병에 미치는 2차 스트레스 요인 연구에 따르면 재난 후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이 이웃이나 지자체, 중앙정부와 갈등 경험에 있을 경우에는 발병 가능성이 5.05배, 구호나 복구에 대한 신뢰롭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3.32배, 또 국가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는 2.16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재난 후 총자산이 감소한 경우는 1.75배로 이웃이나 정부와의 갈등 경험이나 정부 지원 부족이 경제적 타격에 비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에 더 큰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상 피해자들을 비롯한 유사 사례들을 살펴봐도 이런 종류의 사회 재난에서 지원 기준만을 따지는 전형적인 공무원식 대응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사고 초기에 즉시 중앙재난본부를 가동하시고 모든 국정에 앞서서 여기에 올인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부천 분향소, 서울 분향소, 명동성당 추모 미사, 조계사 추모 위령제 또 백석대 기독교인 예배 등에 참석하시면서 그 추모의 마음을 또 그 명령들에 위로를, 달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심리회복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1~2년에 걸쳐 회복이 진행되며 초기 1개월 내지 3개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회복하는 동안 정부 측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적인 정책 기준보다 이분들의 완전한 회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렇게 방침도 정하고 세부 계획도 세우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방침은 세웠고 구체적인 방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매일매일을 점검하면서 또 매일매일 그들이 호소하는 호소를 들으면서 이 부분

아주 면밀하게 초기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난트라우마 심리지원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초기에 공공에서 83명, 민간에서 50명 등 총 133명의 민관 합동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또 대응인력, 일반 국민 등에 대해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 서울합동분향소 두 곳에서만 지원하는 심리상담을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을 통해 확대 지원하고 있지만 심리지원은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조금 전에 기본적으로 3개월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동료 위원께서는 이것을 기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치료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당부도 하셨는데, 이 인원이 지금의 재난의 규모나 또 이번 압사사고의 재난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참사 수준에 가까운 충격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맞춤형으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복지부가 그러한 보건·복지 차원에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우선 이번같이 대형사고에서는 유가족 그다음에 부상자 가족 그다음에 현장 목격자 등의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 매뉴얼 같은 걸 보면 신체적 타격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리적 타격에 대해서도 빠른 회복,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 방안과 보완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예, 민관 합동 통합심리지원단을 그래도 발 빠르게 구성하셨으니까 이것이 풀가동되고 부족하면 더 보완해서 하시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먼저 10월 29일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는, 참사는 현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씨랜드 사고가 있었을 때 바로 그다음 날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사고 수습의 첫 번째는 책임 있는 사람이 제대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은 ‘경찰을 투입해도 막지 못했을 것이다’, 용산구청장은 ‘행사가 아닌 현상이다’, 국무총리는 외신들 있는 자리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뭐냐’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이런 태도와 자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부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위원 무한 책임이 있는데…… 저는 이런 태도가 훨씬 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직자들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여기에서 사과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강은미 위원 저는 이 참사는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헬러원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대책을 세우지 않았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당일날 6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위험을 경고했어요. 그때 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냐.

그리고 10시 이후에 참사가 시작돼서 실제로 동원이 됐을 때 그때 지속적으로 여러 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기관한테 요청을 했는데 또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앞서 두 단계는 다른 부처의 일이지만 세 번째, 현장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혹시 지금 이 시스템의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우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 사전정보 공유가 조금 부족했다는 사실이 제일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법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이송수단 확보, 응급인력 확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상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의무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니까 재난응급의료시스템에는 실제로 현장의 총 대응하는 분이 지역의 소방서장이고 그다음에 응급의료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장인데, 가령 보건소장이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10명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 실제로 통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에 따라서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령 체계를 빨리 세우고 그 체계에 따라서 바로바로 분류하고 이송하고 이런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구조였을 텐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문제는 소방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찰에게 빨리 현장을 수습할 수 있는 옆의 보조인력을 요구했는데 그 보조인력들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급하는 구급대원들도 보니까 현장에 접근을 못 하니까 800m 정도를 장비를 들고 뛰어가서 대응을 했던 말입니다. 그 사이에 실은, 보통 1~4분이 최적기고 10분이 지날 때마다 희생할 확률이 10%씩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고의 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 보건복지부 관련된 현장 응급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지 보건소장이 전체를 다 포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한의 일부를 DMAT 팀에 이관한다든지, 아니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뉴얼에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사상자의 응급 대응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이번에 판명이 났으니까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예, 빨리…… 저도 전체 매뉴얼을 다 살펴봤는데 실제로 그 매뉴얼대로는 도저히 보건소장이 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중환자 수용 능력이 23시 18분에 8명,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날 1시 43분에 22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응급실 과밀화고 그다음에 중증 응급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책도 한번 마련을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은미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복지부는 다른 부처의 협력을 받아서 그 협력만 하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핵심은 그 순간에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핵심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강은미 위원** 관련해서 부처의 의견들을 충분히 하계, 다른 부처하고 협력해서 다시 한번 필요한 시스템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인력 문제도, 지금 정원율에 비해서 현원이 61%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정확하십니다.

○**강은미 위원** 여기도 제대로 좀 충원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국회의원으로서는 10·29 참사와 관련된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및 부상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10·29 참사 현장과 응급실에서 사력을 다한 의료진과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관님, 저는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뭘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그날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뭘 좀 미리 손봤어야 될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글썽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 현장 응급의료 대응과 관련해서는 보다 빠른 상황 정보의 공유 그다음에 보다 빠른 출동 그다음에 보다 빠른 이송 등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훈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부터 하나씩 해 볼게요, 보다 빠른 점검.

우리가 중앙응급의료상황팀에서 나온 10시 38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기준으로 오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2에 최초 접수했던 시간은 18시, ‘압사될 것 같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든타임이 4분인데 10시 38분에 접수된 기준으로 우리가 이 모든 토론을 해 본들 그날로 돌아가도 이 사고는 우리 못 막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기 대응의 시점 자체를, 우리가 현재의 제도상에 보면 DMAT이라든지 이를테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서울구급센터 관리자가 전화가 되면 인지되는 10시 38분으로 놓을 게 아니라 112에 최초 신고됐던 6시 34분으로, 접수했던 시간으로 바꾸어서 이 문제들을 논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날로 돌아가도…… 책임 소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4분의 골든타임으로, 사람을 응급으로 살릴 수 있는 시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부터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 체계 자체의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모바일 상황판을 통해서 세종시의 재난과장이 점검한다라는 건 정말 저는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걸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걸 잘하고 있다고 해도 그날로 돌아가도 이걸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장관님이 좀 찾아보셔야 되겠다.

세 번째는 오늘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날로 돌아간다고 수용 능력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예요. 초기 대응 부재 그다음에 현장 컨트롤

타워 부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용 능력에 대한 문제점 이 세 가지가 우리 복지 파트에서 챙겨야 된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것들을 매뉴얼들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22시 38분 중앙의료원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18시 34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령 예를 들면 경찰청 센터에서 함께 판단하는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이걸 압사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는 우리 내부의 시스템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알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내부적인 매뉴얼을 새롭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컨트롤타워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답변하신 길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더 다른 방식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수용 능력도, 이것도 설명이 좀 다르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저희 자료에는 22시 15분에 119 최초신고가 접수됐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18시 48분을 말씀하셨고, 접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접수가 됐을 때 바로 중앙응급상황실과 연계돼 갖고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복지부의 과장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 친구도 밤새도록 모니터링하고 나중에 보고한다고 애를 썼는데 이것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두 분께서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지금 보면 당일날 아침까지 중환자가 총 서른한 분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10시 22분에 22병상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2시 반경에는 39병상을 확보해서 숫자상으로는 확보된 것 같았는데 적기에 병상 확보가 이루어졌는지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보가 안 된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병상 문제는 적기도 있는데 플로우(flow)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사람을 먼저 어떻게 배치하고 빼고 이런 흐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반복되지 않으려면 오늘 그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냐는 질문을 자꾸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조적으로, 오늘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매뉴얼의 문제 이렇게 했지만 10시 15분이라고 하든 38분이라고 하든 6시 34분에 접수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차피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한, 틀을 깨는 방식으로 문제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훈식 위원 두 번째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판을 자꾸 깨뜨려 줘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 일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이태원 참사 당시 총 15개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을 해 가지고 의료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뛰어가서 최선을 다해 준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복지부도 재난의료지원팀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의료지원팀 관련 인력도 더 늘려야 할 것 같고 의료 지원 활동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의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의 상황 판단이 늦어지면서 재난의료지원팀 지원 요청도 같이 늦어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별·권역별 소방 그다음에 응급상황실, 보건소 그다음에 DMAT팀 간의 협조체계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안부의 정보체계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연결보다는 아까 질의응답에서 나왔지만 119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자동, 저희도 조기 대응하는 그런 체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CPR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CPR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적십자지사의 CPR 교육 문의가 2배로 늘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CPR을 직접 해 보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 비중이 꽤 높다고 합니다. 또 예산 소진으로 교육 일정이 마감된 보건소도 있고 이미 두세 달 넘게 예약이 차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CPR 교육을 제공하는 인프라나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챙겨 주시기 바라구요.

실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려면 두세 번 교육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CPR을 비롯해서 안전 관련된 교육을 반복적으로, 습관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교육 기회 확충 그다음에 교육의 내실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인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 이종성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과 또 유가족들의 애도를 기원합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신 경찰 또 응급의료팀,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어떤 잘못이나 특정인에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대형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부실 그리고 불법행위의 관행적인 묵인 이런 데서 요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장의 요인도 있고 누적된 요인도 있고……

○**이종성 위원** 그래요. 기본적으로 안일한 인식들, 불법 주차, 불법 구조물 이런 관행적인 어떤 불법행위들 또 특히 재난대응체계의 미흡한 조치도 여기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결합돼서 종합된 결과물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재난대응체계 부분이라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종성 위원** 이번에 제대로 다 작동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초기 대응은 매뉴얼대로 작동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성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데 다만 그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종성 위원** 이 매뉴얼에 경찰, 소방청 등이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하고는 직접 연계돼 있는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소방이 연계가 돼 있다고 하는데, 10시 38분에 최초로 소방에서 연락을 받으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 위원** ‘10여 명이 깔린 듯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상 어느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마 코드 옐로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종성 위원** 옐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종성 위원** 주의 단계요? 이미 ‘10여 명이 깔린 듯하다’고 하면, 매뉴얼상 10여 명의 부상자가 있다고 하면 경계 단계입니다. 오렌지 단계입니다, 오렌지 단계. 그렇다고 보면 38분에 바로, DMAT이나 신속대응반 출동 요청을 바로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9에 최초 10시 15분에 ‘길거리에 널린 게 부상자’라는 접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10시 15분에 119가 ‘길거

리에 널린 게 부상자’라는 신고를 받고 바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연락을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38분에나, 23분이 지난 38분에서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연락을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상당히 까먹었고 그리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또 거기서 한 10여 분이 지난 뒤에서야 재차 119에서 연락이 오니까 그제서야 의료진 파견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35분 정도를 까먹었어요. 그리고 DMAT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11시 20분……

최초 10시 15분에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신속하게 이런 체계가 가동이 됐다고 하면 1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1시간이면 이미 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난 뒤이지요. 이건 대응체계에 어떤 심각한 가동 오류가 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좀 더 빨리 상황이 공유가 돼 가지고 의료진 출동 요청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성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게 문제고, 119 그리고 경찰, 응급의료상황실, DMAT 이 각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결체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저희 방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걱정이 많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종성 위원** TV 장면에서 아직도 그 현장 장면들을……

1분만 더 주세요.

현장 장면들이 이따금씩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길 가운데에 시신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최소한 블라인드라도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나라 유사 사례 보면 다 블라인드 설치하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블라인드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누가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규정상으로는 임시 영안소를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상자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종성 위원** 지금 영안실 섭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영안실 분산 이송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관리라든가 시신 처리, 영안실 후송 이런 업무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한 가정의 가족을 잃은 분들 그리고 친구, 지인을 잃은 분들은 아마 한없이 참담하고 비통하고, 정말 그날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뭔가 대비를 잘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고 모두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날도 ‘압사될 것 같다, 이태원 가면 너무 힘들다, 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안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건 처음 들어 봅니다.

○**전혜숙 위원** 그날도 가자는 사람과 가면 죽을 것 같다, 너무 많이 밀린다 해서 안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은 아는데 이 재난 대책을 해야 될 정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이 ‘웬지 사고가 날 것 같다’ 하는 119 신고를 했는데도 그런 위기를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게 이번 참사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정부의 총체적 재난 불감증 그런 게 이번 현상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많이 못 살린 것 중의 하나가 인파가 너무 많아서 소방·응급실 차가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조인력이 들어갈 수 없었고 사람을 빼 오기가 힘든, 그러니까 4분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도 없는, 그 생명길을 열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된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시스템이 안 돼 있다 기보다는 작동하기가 어려울 게 불법 주차가 된 게……

○**전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시스템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이런 게 있었다면 하루 전날 지자체와 복지부와 소방청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경찰

을 동원하든 어떻게 해서든, 의용소방대에 도와달라고 하든 해서 일단 그 생명길 확보는 했었어야 되지 않나?

장관,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좀 안타까운 거고요.

○**전혜숙 위원**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거기에 교통 당국 그다음에 지자체, 보건 당국 그다음에 경찰 이런 분들이 사전에 정보도 공유하고 대책도 마련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민은 아는데 우리 정부는 모르고, 국민들이 위험하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듣고 대책을 강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게, 그것을 보고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무시한 것이 나는 이 사고……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은요, 큰 사고와 작은 사고는 얼마나 예견하고 대비를 했느냐, 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돼지콜레라병이니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대비를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발생하지 않지만 대비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큰 사고가 되는 겁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정부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계속 ‘정쟁으로 몰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정치적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쌍용자동차 파업이 폭력적으로 진압되고 나서 노동자와 가족이 무려 30명이나 자살한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기억 상세하게……

○**전혜숙 위원** 세월호 참사 때도 그것을 도운 학생, 선원, 잠수사, 봉사자, 유족들이 엄청난 자살 시도를 하고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심리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제가 이 문제점을 보면요, 일단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를 하고 10·29 참사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의 그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언행도 이분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정부의 태도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국무회의에 가시면 꼭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는 이 심리지원의 중요성에 비해서 정부의,

복지부의 심리지원 대책이 조금 빈약하다고 느낍니다. 이태원 참사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라도, 어떤 이유든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분들은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전화를 하는 걸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찾아가고 최소한 심리치료를 나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중요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느냐면 최소한 직장에서 병가를 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치료를 받는 데 여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그분들에게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력들하고 또 소방관·경찰관들도 트라우마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분들이…… 제일 큰 피해자가 사실은 피해자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가 지원인력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심리상태도 복지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 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지금 심리지원 원칙은 유가족, 부상자 그 가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현장의 구조 그다음에 응급인력 그다음에 현장 목격자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병가, 여비 지원 같은 것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정말 저는 침통한 마음으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참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또 중대본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정말 많은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하고 안 중하고를 떠나서 조그마한 말씀이라도 귀담아들어서 정말 대책을 수립하고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걸 잘 받

아들여서 잘 녹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아까 장관님 답변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중대본의 1차장이 행안부장관이고 2차장이 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래서 아까 발언 중에 119 신고가 되면 바로 복지부에서 해야 할 일, 긴급의료 대응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119 신고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기윤 위원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고 하는 시스템은 저는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렬 형식으로, 1차장은 어떤 일을 하고 2차장은 뭘 하고 하는 부분이 병렬로 이루어져야지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가 90분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장 대응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더 빨리 그 현장에서 그런 지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 차를 타고 왔는데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되는 게 40분이…… 저는 무슨 사고인지를 몰랐어요. 안에,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도 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1시간 한 30분이 지연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지만 탄광 있잖아요. 봉화 탄광 매몰이 221시간, 약 10일 정도 있었는데요, 참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그분들이 무사 귀환을, 생환해 왔는데요, 참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반추해 보면 저는 앞으로 어떤……

이번에 이 사건도 예기치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늘 헬러윈 데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왔고 하니까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있어 온 것 아닌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됐을 텐데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측하지 못하는 앞으로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탄광 같은 것, 열차 사고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정말로 일어나면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상세히 해서 정말로 10분, 20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응급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할 때마다 위원들이 지적하고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저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게 왜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이 정부만이 아니라 그동안 해 오면서 슬 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떤 케이스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장관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전체의 재난 대응에 대한 시스템을 재점검해 봐야 될 거고, 특히 복지부는 현장의료 대응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 가지고요 한번 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중대본의 회의에 참석하시거나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면 이 부분을 반드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하면 답이 나올…… 그 경우의 수보다 더 새로운 경우의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다 망라해서 그 케이스보다 새로운 케이스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케이스에 대한 긴급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정부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반드시 이 부분 만들어서 한 분의 국민도 이런 결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는 현 정부가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우선 10월 29일 발생한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또 이번 참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죽 답변하시는 것 보면 사전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도 중요한데,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가 시스템상으로 해서 내가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지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공직자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본부가 900명이구요.

○한정애 위원 몇 명이시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900명이구요.

○한정애 위원 900명이요?

우리가 모바일 상황실이라고 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119 구급센터의 카카오톡 내용이 공지된 것은 29일 10시 38분이구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때 내용이 한 10명 정도가 쓰러진 것 같다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구급센터도 여전히 현장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용은 알 수 없고 단지 받은 내용을 전파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나에게 보고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10시 반 정도부터 SNS에 돌기 시작했구요 11시 반에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도 아마 당직사령도 있고 할 텐데 11시 반에 뉴스가 나온 상황은 이미 수십 명이 쓰러지고 실신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뉴스가 나왔는데, 복지부 인원이 900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지 아니하고 비상연락망을 갖고 있었을 텐데도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공직자는 본인이 보고받을 때까지 그냥 다 대기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나한테 뭔가 보고가 와야지 나는 움직이는 거지, 내가 인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인 건가요? 어느 정도의 참사가 벌어지면 복지부 당직은 움직입니까? 문자를 보냅니까? 그 기준은 있습니까? 이 정도의 사고에도 연락이 안 가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군가가 자꾸 보고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이다 아니냐는 나중의 문제이고요. 일단은 알려야 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단독방에 보면…… 좋습니다. 그 단독방에는, 모바일 상황실에 응급의료과의 주무관, 사무관, 담당 과장, 담당 국장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도 보고가 안 났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크기의 사고는,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사고의 규모나 크기가. 그래서 복지부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용산구를 벗어난 응급상황실들을, 응급실들을 연결해 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역할이 보건복지부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건데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은 보고서용으로만, 보고용으로만 만들어 놓고 매뉴얼대로 실제로 실전을 해 보거나 연습을 해 보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람이 바뀌어요, 담당 과장이 바뀌고 담당 국장이 바뀌고 담당 사무관이 바뀌고 주무관이 바뀌고 지자체 사람들이 바뀌고. 그래서 매뉴얼대로 작동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훈련을 해야지만 그대로 됩니다.

이번에 이 참사를 계기로 또 뭔가를 만드실 거예요. 그냥 국민에게 보기 좋은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작동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예행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도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매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걸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응급의료법이 있고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10조가 있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 응급의료법 제18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계획의 수립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그러니까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이런 참사에 대비해서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발생의 원인에 따라서 또는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계획을 미리 사전에 수립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립된 이 내용이 있으십니까,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확인이 안 되시면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것이 없다면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뢰를 하든지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보건복지부 내 상황 전파의 시스템은 제가 확실히 재검토해 갖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내 상황 전파도 물론 중요하지만 119 사고 접수서부터 첫 번째 DMAT팀이 나간 것까지의 그 의사결정 구조를 한번 보고 제가 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복지부 내에도 의료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사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DMAT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한정애 위원** 조금 더 일찍 누군가가 나가서, 사실은 현장만 좀 정리를 해 주는 사람만 많았어도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정보 공유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국민의힘 최영희입니다.

우선 먼저 이태원 참사를 당하신 분들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인 비극과 관련해 각계에서 여러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근거해 재난, 다수 사상자 사고의 예방·대비·대응·회복을 주관하거나 이에 관하여는 모든 정부기관·공공기관·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자동차의 운영자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번 사고는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만 매뉴얼 자체가 이런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에 있어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이 단장입니다—의 통제하에 보건소장이 현장응급의료소장을 맡아 가지고 그 지휘 아래에 DMAT 그다음에 보건소의 신속대응반이 환자 분류·응급처치·이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참사 발생 이후에도 상황 전달 등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응급의료체계도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재난의료지원팀의 최초 도착 시간은 오후 11시 20분으로 서울대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소방당국에 첫 신고가 들어온 시점이 오후 10시 15분이었음을 고려하면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방 신고 기준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입니다. 특히 언론 등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의료지원팀 15개 팀을 가동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오후 11시 20분에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두 팀이 자정이 넘어 새벽 1시, 4개 팀이 추가적으로 도착할 때까지 약 두어 시간을 8명가량이 버텼습니다.

장관, 참사 당시 재난의료팀이 현장 도착하기

까지 약 1시간 이상 소요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DMAT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종합응급상황실에 부탁을 하고 또 그 상황실에서 부탁하는 이런 두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그 단계에 시간이 소요됐는지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 도착도, 현장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접근이 좀 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팀만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서울대팀, 한양대팀, 그다음에 강동경희대 의료팀이 먼저 도착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선착대가 파악한 현장 응급 수요에 따라 가지고 추가출동을 요청을 받은 후발대가 출동을 했는데 선착대는 중환자 응급처치와 우선 이송을 결정했고 후발대는 경상자 처치를 지원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죄송하지만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이동전화 기지국 정보 CPS를 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휴대폰과 수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동전화 기지국의 접속 정보를 활용하면 인구 밀집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압사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실종자 수색도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지국 접속 정보에는 휴대폰 사용자의 동선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장관, 이동전화 기지국 정보를 재난 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활용하는 문제는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기지국의 통신 정보는 해당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응급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 위원** 최혜영입니다.

먼저 10·29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죄의 말씀도 드립니다.

장관님, 10·29 참사 심리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뉴스로만 소식을 접하는 저로서도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어떨까 상상도 가지 못하고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서 심리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참사 유가족, 부상자분들을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1 대 1 매칭 심리상담 전문가 투입 또 의료비 지원들, 특히나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복지부가 최소한 유가족이나 부상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찰·소방대원·의료 인력들·기자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황보고서를 보시면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이 상당히,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바쁘실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제대로 안내가 안 돼 가지고 심리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혜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아프면 알아서 신청해라라는 그런 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목이 쉬도록 소리치면서 현장을 통제했던 아마 이태원파출소 소속의 김백겸 경사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항상 인터뷰

에서 말씀하시는 건 ‘죄송하다’라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이분이 죄송할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날 화성기라도 챙겨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이 경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많은 인력들이 대부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복지부가 아프면 신청하라는 식으로 신청하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는 유가족이나 부상자 가족들한테는 저희가 일일이 문자를 드리는데 연락처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은 심리상담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대로 미리 문자를 드려 가지고 심리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지금 이분들은 사실, 현장 출동할 때의 인력들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래서……

○**최혜영 위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도 아직까지 죄책감으로 ‘내가 무슨 심리치료를 받아야 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본인이 지금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투입돼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최혜영 위원** 이런 분들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참사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복지부 인력도 150명 넘게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혜영 위원** 이분들 어떻게습니까? 지금 쉬기는 커녕 심리지원 못 받고, 11월·12월에 있을 예산·법안 심사 때문에 지금 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또 공무원 모든 분들이 심리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 대책 마련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의료계에서 심정지 환자분들의 골든타임

이 4분이라는 거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목격자 심폐소생술 비율이 30%에 불과합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서 교육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 교육이 지금 일반인 대상으로 안 되고 있고 또는 동영상 시청으로 끝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몇 군데 병원에서는 가상 VR 기기나 또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지금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복지부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병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가상현실 형태의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지원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위원 먼저 10월 29일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또 아직 부상으로 시달리고 계신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정에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매뉴얼은 아마 많이 수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서 많이 수정을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형 재난 사고에서 응급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가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실제 그 매뉴얼대로 행동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그렇게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모의 훈련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매년 실시하는 재난현장 응급의료 모의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이 그냥 교육훈련으로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되는 분들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모의훈련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이번에 최초의 상황보고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받고 그다음에 DMAT 출동 요청을 받은 게 10시 45분경인데 실제 서울대학교에 통지한 건 11시로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재형 위원 그렇지요, 서울대학병원에 요청한 것은? 1분 1초가 상당히 급박한 그런 상황인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23시입니다.

○최재형 위원 15분 동안 지체된 거는 뭐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몸에 배어 있다면 요청 즉시, 요청을 받은 즉시 통지했으면 적어도 15분은 아낄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결국은 평소에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앙응급의료센터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들을 처리하는 소방관들이나 또는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될 각 지역의 병원들 또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어떤 훈련이나 이런 상태를 좀 확인하시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현재 현장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의료기관의 점검 상황 등을, 응급의료 상황 대응 능력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같이 한번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한번 해 보고요.

○최재형 위원 그런데 매뉴얼뿐만 아니라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재형 위원 그다음에 지금 트라우마 치료에 관한 것들을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경우 사망자들도 있고 사망자의 혹시 유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현지에 있었던 부상자들이나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심리치료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본국으로 가시기 전에는 저희가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서 통역 서비스까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심리지원을 했는데요. 아마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심리치료 지원을 요청하는 분이 있으시면 외교부에서 해당 대사관,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치료 지원을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지금 아직 중상자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그중에는 아마 심정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 뇌 손상으로 영구 장애가 남는 분들도 평생 개호를 받아야 될 분들도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지금 현재 중상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안 그래도 저도 병원 몇 군데를 가서 젊으신 분들이 지금 누워 계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지금 2 대 1, 그러니까 복지부 직원 두 분을 지금 2 대 1로 해 가지고 한 분은 환자의 상태도 점검을 하고 다른 분은 가족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재형 위원** 그런데 회복이 불가능한 뇌 손상을 입은 분들에 대한 향후 치료나 지원에 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치료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심리지원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환자실에 아직 계신 분들은 빠른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 위원** 평생 개호가 필요한 분들,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나중에 의원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윤 위원** 먼저 제 지역구인 하남에 거주하시던 두 분의 젊은 희생자분들을 비롯한 백오십육 분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투하고 계시는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 지금 유가족분들을 저희가 조문을 갔더니 당연히 망연자실하시고 저희 지역의 한 분 조문을 갔을 때 그 부모님께서 말씀이 빨리 장사를 지

내고 싶다고요, 빨리 장사를 지내고 싶다……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자책과 자괴감을 가진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은데요.

오늘 현안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시스템 이전에 이런 국가적 재난이나 참사를 대하는 공직자, 특히 책임 있는 공직자분들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가 굉장히 큼니다.

저는 참사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공직자들의 책임 없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뭐까지 가느냐 하면 ‘이게 나라냐?’ 이렇게 갑니다. 대통령부터 총리, 소관 부처 장관, 서울시, 용산구청, 경찰청, 서울청, 누구 하나 어떤 사고가 났든 그런 대형 참사가 났으면 진짜 죄송한 것 아닙니까?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무슨 근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으면 먼저 사과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결국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허망하게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최자가 있느니 없느니…… 제가요, 서울시 근무할 때 헬러원데이하고 있잖아요 제야종 타종은 기본입니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회의를 몇 번씩 합니다. 그리고 담당 구청은 비상입니다, 비상. 아니 이게 도대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이게 장관님 책임 아닙니다, 선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나는 서울시·경찰청이 뭐를 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장관님, 중대본 참석하시잖아요. 2차장으로 계시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종윤 위원** 지금 시스템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시스템 얘기도 하시되 태도와 자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책임감 있게 한번 지적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그리고 시스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후에 개선 대책 마련한다고, 개선 방향 마련한다고 하는데 진짜 할까? 제대로 잘 진행될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태도와 자세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장관님 오늘 오셔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종윤 위원 특히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응급의료상황실이라는 게 뭐냐, 사건이 그리고 사건이, 상황이 발생해야 작동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재난 예방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방과 선제 조치가 약한 겁니다. 대규모 인파가 분명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조치를 하는 행정기관 들쭉치고 간에 장관께서도 이런 참사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거나 그런 것들을 사실 소방청이나 여러 행정기관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긴급하게 의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까도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단계를 없애고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예견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응급의료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셨잖아요. 헌신적인 경찰관들 그리고 인공호흡, 응급처치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 이런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분들에 감동받고 마음으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하나가 돼서 하고자 하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있는 공직자, 대통령부터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장관께서도 보고야 0시 50분에 받으셨든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고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과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요 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용산구청 직원들이요 할로윈데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이 제대로 지적하지 않으면 그리고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수장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단순히 사전 행정조치는 없다 하더라도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것, 이번 참사를 보면서 그것 책임 있는 자세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종윤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나중에라도 제

대로 한번 대책을 마련하려고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중증도 분류표 그다음에 병원별 수용능력표는 오늘 보내 주셨어요. 어제가 보내 주셨고 사상자 이송 현황하고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일지 있잖아요, 이것. 이게 아마 응급의료소를 보건소에서 0시 9분부터인가 운영을 했는데, 당연히 모바일 상황실 운영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기록한 것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번 파악하셔서요 그걸 좀 보내 주세요. 그래서 한번 대책을 같이 촉구해서 국회가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보건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운영일지 같은 건 보내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曹明姬 위원 자료 요청 잠깐만……

○위원장 정춘숙 자료 요청이요? 예.

○曹明姬 위원 자료 요청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주에 일본 출장이 있어서요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알아서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사망자 중에서 본국 이송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일본인이 없습니까? 2명이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세 가지 요청할게요.

그다음 부상자가 197명이라 그랬는데 그 부상자 중에, 외국인 중에 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일본인이 있다면 좀 더 상세하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부상자가 있다면 일본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의 지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까지 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최중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상 당해서 입원하고 있는 사람 상황을 알려 달라고 하니까 ‘중상’, ‘경상’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주는 겁니까, 지금?

‘왜 파악을 못 하고 있냐?’고 하니까 서울시 담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2 대 1로 해서 복지부 직원이 상태를 점검하고 가족들과 연결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중환자실에 있는……

○위원장 정춘숙 중환자실에 있는, 물론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것 잘못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임상……

○위원장 정춘숙 장관님, 지금 중증도를 여쭙보는 것은 최재형 위원님 말씀따라나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자료 빨리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병원하고 협조해 가지고……

○위원장 정춘숙 요청하신 위원님들께도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춘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2)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3)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0)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4)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3)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8)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8)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0)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6)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2)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25)
1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1)
1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9)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03)
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7)
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3)
1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5)
1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0)
2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4)
2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8)
2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2)
2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4)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0)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5)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8)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2)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7)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2)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4)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0)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4)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1)
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9)
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0)
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2)
37.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9)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8)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2)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2)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7)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6)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2)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9)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6)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9)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0)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7)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5)
5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5)
5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4)
5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7)
5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7)
5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9)
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1)
5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
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5)
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0)
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0)
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5)
6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0)
6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5)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3)
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2)
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9)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4)
6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0)
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0)
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9)
7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3)
7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4)
7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16217)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13)
7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45)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68)
7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341)
7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652)
78. 미용사법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69)
7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258)
8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544)
8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5)
82.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5)
8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636)
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643)
8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716)
8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720)
8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6)
8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1)
8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2)
9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2)
91. 상담사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6)
9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7)
93.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7)
9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1)
9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0)
9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6)
9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4)
9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024)
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717)
100.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5)
10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280)
102.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6)
10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412)
104.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3)
105.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4984)
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095)
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19)
1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53)
1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26)
1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853)
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08)

1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67)
1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827)
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885)
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310)
1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579)
1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092)
1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47)
1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490)
1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957)
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5)
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9)
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8)
1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4)
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4)
1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0)
1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1)
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1)
1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4)
1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4)
1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2)
1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5)
13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1)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4)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7)
1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4)
1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1)
1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1)
1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7)
1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5)
1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4)
1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9)
14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611)
1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351)
1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745)
1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902)
1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8)
1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3)
1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2)
1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8)
1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2)
152.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31)
15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014)
15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096)
15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368)

1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619)
15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9)
15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5)
15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7)
16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4)
16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3)
16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4)
16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03)
1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7)
1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6)
1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5)
1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3)
1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6)
1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4)
1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1)
1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9)
17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562)
17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6265)
17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5)
17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27)
17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중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4)
17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4)
17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8)
17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798)
18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790)
18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59)
18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484)
18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968)
18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998)
18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266)
18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395)
18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389)
18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387)
189.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4)
19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6)
191.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9)
192.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7)
19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
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
19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
19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5)
19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6)

19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6)

1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9)

19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7)

20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0)

201.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강선우 의원 등 178인 발의)(의안번호 2116324)
(14시34분)

○위원장 정춘숙 의사일정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1항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까지 199건의 법률안 및 1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 사전 협의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단말기 자료와 법안 및 결의안별로 상세하게 작성된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아울러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예산안을 상정한 다음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0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가. 보건복지부 소관

(14시35분)

○위원장 정춘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2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03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보건복지 정책과 예산 편성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08조 991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추가경정예산 101조 4100억 원 대비 7.5%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 추세가 지속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예산 편성의 방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입니다.

복지와 성장 선순환의 대표적인 사례인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노인 의료비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아동, 보육 등 저출산 대응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물론이고 이후 어떤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필수의료 이용함에 있어 지역별 편차나 분야별 부족함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입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연구소 등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과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 더 나은 보건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부족함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정 여건의 한계와 정부안 제출 이후 변화된 제반 상황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도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고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이나 대안 제시와 같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획된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하여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08조 9918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 본예산 대비 11.8%, 추정 대비 7.5% 증가된 규모입니다.

4쪽, 분야별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본예산 대비 14.2% 증가한 92조 662억 원, 보건 분야는 0.6% 증가한 16조 9256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58쪽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5쪽, 기초생활보장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6조 4059억 원으로 금년 대비 13.5% 증액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등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는 금년 대비 14.2% 증가한 6조 141억 원, 의료급여는 금년 대비 12% 증가한 9조 9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4조 6026억 원으로 11%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50% 인상하고 장애인연금을 4.7%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원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신규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1만 1000명 확

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금년 대비 21.5% 증가된 25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적연금 부문은 금년 대비 약 18% 늘어난 37조 1590억 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된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예산을 38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지일반 부문의 예산은 금년 대비 약 6.2% 늘어난 9631억 원입니다.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예산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부터 30쪽, 아동 및 보육 부문입니다.

아동 및 보육 부문 예산은 9조 8213억 원으로 금년 대비 7% 증액하였습니다.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자립수당 지급 예산을 162억 원 증액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 신규 지원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예산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지급을 하기 위해 1조 6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노인 부문은 금년 대비 13% 증가한 23조 1143억 원입니다.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기초연금을 4.7% 인상하고 평균 국고보조율을 82.04%로 상향하여 예산을 2조 416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55만 명으로, 종사자를 약 3만 7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50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적으로 증액되었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 대비 7.9% 감액되어 4조 5154억 원입니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1700개 긴급치료병상 확충을 위하여 2573억 원,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을 위하여 3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자살 예방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예산은 금년 대비 8.2% 증가한 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서 56쪽입니다.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 등 21개 신규 R&D 사업에 총 1057억 원을 편성하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정보 보관시스템 구축 예산 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입니다.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금년 대비 4.1% 증가한 12조 4102억 원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 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4710억 원 늘어난 10조 9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을 9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0.8% 증가한 66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급식의 영양·위생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다빈도로 사용되는 인체적용 제품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도 실시하여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헬스 안전관리 강화와 혁신성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감증을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희귀·필수 의약품과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필요한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안전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연구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방침을 감안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소중한 예산을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 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약처가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과 7쪽 23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제안설명으로 같음하고, 12쪽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3년 세입예산안은 22년 대비 22.8% 감소한 387억 원 수준입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2년 대비 0.8% 증액된 6694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해관리 선진화에 22년 대비 4.4% 증가한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사업은 담배 유해성분 분석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으로 식품 안전성 제고에 22년 대비 7.9%

증가한 6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운영 사업은 식품 안전정보 디지털 전환을 위한 푸드QR 홈페이지 구축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식품 등 표시제도 강화 사업은 식품 등 점자표시 연구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식생활 영양 안전성 제고에 22년 대비 0.5% 증가한 7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은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와 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에는 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제고에 22년 대비 6.3% 증가한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참여 등 의약품 규제 조화를 추진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에 22년 대비 0.9% 감액한 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은 천연물안전관리원 건축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제고는 22년 대비 1.4% 감액한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기 품목 DB 구축 등 완료 소요가 반영되었고 회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을 위한 거점보관소 운영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는 22년 대비 3.9% 감액한 15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시험검정동 증축공사 등 완료 소요가 반영되었고 컴퓨터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식의약품 행정 지원에는 22년 대비 2.3% 감액

한 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완료 소요가 반영되었고 중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간 디지털 통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52쪽 이후 기본경비 및 참고자료는 배포한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존경하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심의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제출한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약 36.9% 감소한 3조 69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매와 접종 대상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질병 부담 경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백신 및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고 진단검사비 지원과 생활지원·유급휴가비, 격리·입원치료비 등 내년도 필수 방역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미래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고 감염병 유행예측·위험 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 마련 등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에 영유아 로타바이러스를 신규 도입하고 결핵 취약계층 지원 및 감염병 교육 확

대,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 등 상시 감염병에 대해서도 철저히 예방·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감시·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중독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취약계층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에 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신·변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여 방역현장 수요 기반 연구,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미래 대비 보건의료 R&D 분야의 선도적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 위원님 여러분!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의 한계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방역대응 필수 예산뿐만 아니라 그간 코로나 대응으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상시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개요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편성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고 2쪽 재정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은 총계 기준으로 395억 원 증가한 788억 원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36.9% 감소한 3조 6985억 원입니다.

3쪽,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안입니다.

진단검사비 지속 지원 1조 1731억 원과 치료제 추가 구입 3843억 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속 지원 1216억 원 등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해 총 1조 75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은 9318억 원으로 백신 1500만 회분 구매 예산 7167억 원과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506억 원, 이상반응 관리 276억 원 등을 편성하여 내년에도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32쪽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5쪽, 일반회계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40.5% 감소한 3조 985억 원입니다.

5쪽과 6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방역대응 및 예방접종의 주요 내용으로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예비 방역인력 양성 등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한시 소요인 임시생활시설 운영은 종료하여 금년 대비 509억 원 감소한 273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그간 코로나19 감염병·검역 등 분리 운영하였던 시스템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등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175억 원 증가한 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조사·분석과 원인 불명 감염병 실험실 분석,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을 증액하여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근거 중심의 방역을 위해 지난 2회 추경에 신규 반영되었던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운영에 77억 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에 73억 원을 편성하여 지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방역 전주기 단계별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13억 원과 인체 미생물 군집 기반의 난치성질환 치료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13억 원 등 R&D 예산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11.3% 감소한 5552억 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을 위한 예산 187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반영하는 등 금년 대비 174억 원 감소한 3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은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비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사업 종료 등 감소 소요를 반영하여 금년 수준인 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국가 만성질환 감시·분석체계 구축과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 사업 등을 증액하여 3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희귀질환자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특히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진단 후속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금년 대비 29억 원 증가한 4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응급의료기금은 금년 대비 30.2% 감소한 81억 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소요인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 예산의 39억 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여 작성한 검토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 및 검토보고 요약본을 확인해 주시고 구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체토론에 앞서서 숙려기간 예외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안건을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153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 협의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결의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曹明姬 위원 장관님, 23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총 4조 9041억 원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曹明姬 위원 금년보다 7.9%가 감액되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공약으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도입 약속한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曹明姬 위원 그런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료 및 분만취약지 사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과 같은 필수의료와 관련된 예산들 살펴보면 큰 차이 없거나 깎였습니다. 게다가 필수의료 TF에서의 의견 수렴과 논의조차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제, 국감 때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우리 소아과·산부인과·청소년소아과가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아시지요? 동의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曹明姬 위원 그런데 왜 저 예산 깎았습니까?

그리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수가제도 개선도 제가 종감 때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제도개선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曹明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아주 강조했고 평소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행약자 이동권·접근권. 그런데 현재……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도 그렇지만 이게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경사로가 아니고 비탈길이 아니면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고정밀 지도, 디지털 트윈 3차원 고정밀 지도가……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인프라와 시스템이 안 됐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정과제에도 선정이 되어 있어요, 국토위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앞으로 차량이 자율주행이 됩니다. 운전자 없습니다. 카 내비게이션 지도 아주 정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행약자, 장애인 휠체어가 지도상에 나와야 GPS 가지고 내비를 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 휠체어가 지도상에 나타나려면 최소한, 우리 3.2m 그러지만 그게 10m, 3m, 1m 이상은 이 도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밀 지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결위에서 출석하시면,

국토위 할 때 김두관 위원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전연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국토 관련 타 부처에서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아주 요긴한 그런 인프라인데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결위 때 염두에 두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그리고 질병관리청장님, 제가 보도자료 냈습니다. ‘혈세 6.3조 들었던 백신 이젠 처치 곤란’, ‘접종 뚝’, ‘무더기 폐기 신세’ 이것 누구 이야기인지 압니까? 전 정부 때 코로나 백신, 국민의 약 2570만 명이 코로나 감염됐지요. 1차에는 87.9%, 4차 접종률 14.7%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6.3조라는 국민 혈세가 막대하게 들어갔음에도 전 정부의 오락가락한 백신 수급 정책으로 인해 대량 폐기되고 있습니다. 백신 구매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올해 취임하셨지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曹明姬 위원** 예산은 아마 작년 연말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청장님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백신 약 826만 회분이 폐기됐고 폐기 백신의 99.4%가, 즉 822만 회 분량이 유효기간 경과 이유로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창기에 전 정부의 백신 능력 대응으로, 모두 다 온 국민이 다 압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확보에만 급급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과학적으로 하지 않고 백신을 구입한 결과입니다.

자, 내년에 7166억 원 배정되어 있지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曹明姬 위원** 그런데 청장님, 전문가지요? 알뜰히 살펴보십시오. 내년도 이 예산이 제대로, 쓰레기통 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될 건지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올해에 취임했는데 예산은 작년 초부터 원래 그 익년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신정부가 들어서서 전 정부의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이런 상황에 그래도 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한번 예산을 알뜰하게 살펴보고 예산편성 근거가 뭔지 그걸 제대로 살펴서 작년과 같은 전 정부의 오류를 절대 범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예산편성 근거 검토하셔

가지고 전문가로서 꼼꼼히 챙기셔서 유효기간 잘 살피셔서 이런 잔여 물량 활용 대책, 폐기 방지 대책 세워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간 저희가 코로나 백신 도입 이후 공급 일정 조정 또 2가 백신으로 전환 도입이나 해외 공여 등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존 백신은 기초접종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백신의 잔여 물량의 접종률이, 2가 백신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활용도가 조금 감소되어서 폐기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으로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잘 살펴보고 알뜰히 사용하라는 말씀 잘 새겨듣고 예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 전부 다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장관님께서 보실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9월 달에, 9월 초에 제출된 거다 보니까 최근 상황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충 그다음에 제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선우 위원** 최근뿐만이 아니라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한 건 지난 8월인데요. 현재의 인프라와 인력으로는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보강이 필요합니다.

○**강선우 위원** 이미 예산 증액 또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보건복지부가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 재난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실질적인 그런 개선책은 미비한 상황이지요.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의 특징은 트라우마의 전국화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강선우 위원 이게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세월호나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산불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의 이런 재난들, 참사들은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속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참사는 희생자 또 유가족분들 비롯해서 목격자, 이 상당수 관련자가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비롯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전국에 단 5곳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조차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일례로 장관님, 혹시 강원권에 있는 국립춘천병원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완전히 산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접근성이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 설치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 단계 내려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내려가면 이 복지센터들은 재난심리업무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자체 중에는 재난관리사업 담당자가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또 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전·세종·제주, 단 1명도 없고요 대구·광주·충남은 딱 1명씩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뉴얼은 어떠냐? 전국 기초센터 중에서 재난정신건강 관련 매뉴얼을 보유한 곳 역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권역별로, 보시다시피 격차가 굉장히 큼니다. 즉 이번 참사로 인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가 사는 곳 근처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봤자 적절한 치료를 받을 확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그런 거지요.

국가트라우마센터 경우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인력난도 문제입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체를 커버하는데요 공무원 숫자 단 9명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내려가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각각 3명밖에 없어요.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공무원이라도 19명 있기라도 하지만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조차 없어서 단기 기간제 요원에 의존하고 있습니

다. 센터 관계자는 처우가 너무 안 좋아서, 일이 힘들어서 직원이 나가고 나면 충원을 못 하고 있다 또 1명이 팀을 모두 맡아야 해서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것은 돌릴 상상도 못 한다, 여건도 안 된 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이 정도면 그러면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건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자체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이게 제각각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다 다르고요 전문의 없는 곳도 있고요 전문요원조차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그럼 재난만 담당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자살 예방, 약물, 인터넷 중독, 범죄 피해자 등등등 이 모든 업무를 다 다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재난을 담당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과감히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일부 삭감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주요 재난 상담 실적 보시면요, 5년 전이랑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5년 전에는 1578건이지요. 그런데 이게 2만 7185건……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약 1600%가 폭증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최근 1년만 봐도 이 상담 실적이 평균 40% 증가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떠냐, 올해 대비해서 한 3%, 그래서 겨우 거의 제자리걸음이지요.

다음 슬라이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상담 건수 보시면요, 19년도 87만 건에서 21년도는 235만 건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18% 삭감을 해 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으로 만전을 기하라고 했지만 현재 대응 체계 자원으로는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다시 광역·기초센터로 상담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이렇게 점점점점점 내려가는데 앞서 설명드렸 다시피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인력난 허덕이고 있지요.

그러면 광역·기초센터는 어떠냐, 업무 역량 안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서 지원을 받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애로사항이 다 보고가 됐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재 가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을 알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사가 났으니까 어떻게 좀 해 봐라 이런 식으로는 수습이 안 됩니다. 당장 추가 예산,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관님. 내년도 예산안에서 시급히 증액해야 될 부분을 오늘 중으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라고요.

또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트라우마센터 추가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 준비 중인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위원님의 자세한 분석 감사드리고요. 국가트라우마센터 그다음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지금 심리치료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할 정도로 역량이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서 찾으실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트라우마 지원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체계 전반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우선 급한 대로 예산 확충에 최대한 힘을 쏟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혹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국가트라우마센터도 아직 못가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트라우마센터는 가 봤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가 보셨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정춘숙 가서 보시고 얘기 들으시면 상황을 굉장히 잘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지금 비정규직이고 그다음에 상황이 너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꼭 한번 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강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대통령님께서도 대폭 보강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보강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 위원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9 참사 당시 많은 시민께서 심폐소생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지요.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조 대상이 사망에 이를 때 구조 참여자의 형사 책임이 감면된다, 즉 책임을 물을 수도 있더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를 위해서라도요 사망 시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구조 참여자에 대한 형사 책임 면책하는 법안, 본 위원에 의해서 발의되어 있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위원 적극적으로 복지부에서도 지원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신현영 위원 아산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권역 심뇌혈관센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신현영 위원 현재 14개 센터 중에 11개 센터가 운영비 지원이 끝나서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년 3.5억 원씩 지속 지원 가능하도록 예산 증액이 이번에 필요한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 필수의료 대책에도 관련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 안 됐습니다.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응급의료에 대한 최전선에 있는 응급의학과 그리고 배후진료, 최후 진료를 하고

있는 해당 과들까지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골든타임 지킬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책임지고 예산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협의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의료 취약지에 은퇴한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료기관에 재취업하는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계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기 의사 인력 부족, 지방의료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부의 지원금이 없습니다.

장관님, 이 사업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정부가 적어도 지원할 수 있는 명목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의대 정원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치되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주신 시범사업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방안을……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저희가 장관님이 기재부 출신이라 기대감이 큼니다. 그 부분에 의한 능력 발휘를 이번 23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해서 보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백경란 청장님, 오늘 보도에 남동생이 바이오 기업 사외이사 지원하면서 누나 찬스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친누이는 질병청장의 임무를 맡은 백경란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인도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자료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노출되어 있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청장님의 공직을 친동생이 바이오 기업 지원하는 데 사적으로 유용한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청장님께서도 오늘 바이오 주식 논란으로 고발되실 예정이지요? 이런데 동생의 행태가 또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데 노력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사실 질청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코로나 기

간 동안에 상당한 노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으로 인해서 이런 노고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상황입니다.

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에게 많이 부끄러우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지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먼저 국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생이 직접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사인도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정정 고시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현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직무수행계획서의 사인은 대리 사인이라는 것이지만 해당 서류들을 제출할 때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사인은 본인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날짜가 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확인한 것은……

○신현영 위원 날짜가 상이하더라도 최종 제출한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면 모든 제출한 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작성한 것은 8월 3일에 제출을 했는데 이 수행계획서는 사후에 타의, 제삼자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서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염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현영 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여쭙봤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청 직원들에 대한 말씀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저 때문에 일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저를 믿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지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현영 위원** 고발되실 예정인데 국민들한테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

○**신현영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기침이 계속 나와서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청장 업무하고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종목 거래 수익률 관련해서는 질병청 자문과 무관함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임용 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했고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도 우리 청 개청을 위해서 준비하실 때 저도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유의했고 또 임용 후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인사혁신처에서 이해 상충이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검증 심사를 받고 또 매각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공직자에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매우 높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청장으로서 봉사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되새기면서 코로나19 현재 재유행 극복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위원**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본예산 대비해서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이고 6년 만에 최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 총지출 679조에 대비해서 약 6% 가량 감소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마련된 예산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복지부 예산,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지출이 전년 대비 약 11.8%가 늘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최재형 위원** 그리고 정부 전체의, 그러니까 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사회복지 지출만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약 10조 9000억 원, 5.6% 증가해서 작년 증가율 5.4%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면서도 복지 예산만큼은 줄이지 않은 이유, 그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약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지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한 투자인데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은 예산 심의 단계에서 더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무엇보다도 약자 복지 그리고 성장 복지의 선순환에 초점을 맞춰 주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의 국가별 사회복지 지출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 효율성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가 국민에게 지원한 예산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으로 돼 있는 OECD 29개국 가운데 28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현금 퍼주기 복지를 했지만 불평등 해소의 효과가 미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증액된 복지부 예산, 사회복지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기조에서 지출하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우선 저희가 그때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분야하고 또 틈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을 하고 또 비효율적인 부분은 효율화해 가지고 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제도는 한 번 시작이 되면 이게 불가역성으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이나 국민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에 꼭 필요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내년 예산의 규모를 보고 특별히 노인 복지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비난을 많이 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요. 또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이 이게 한 2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시설 예산은 전반적으로 최근 2년간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그 집행 부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꼭 집행 가능한 규모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형 위원** 집행 부진한 이유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물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부진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게 증액된 면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제고를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단가 인상이 제대로 반영돼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많이 모이신단 말이지요.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것은 저희가 다른 데 하다 보니까 시설 확충 예산은 조금……

○**최재형 위원** 집행을만 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노인들의 모임이 더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 예산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 예산은 단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 2년차, 3년도에 걸치는 것도 있는데 아마 초기 사업은 예산을 적게 담아 가지고 줄어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장관님, 작년에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의 역사적인 9·2 노정 합의가 성사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현재 노정 합의의 26개항 합의사항의 이행완료 정도를 보면 여러 개가 되고는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이 아직도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고 언제 제출 예정에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보고받기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일단 서비스 적용을 확대하는 걸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 외에도 서비스질을 높이고 사후관리 강화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언제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

○**고영인 위원** 일단은 시간 관계상 언제쯤 가능할 것, 정확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내년 1/4분기 안으로……

○**고영인 위원** 내년 1/4분기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고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또 한 가지, 공공병원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필연적으로 공익적자를 남게 돼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런데 적자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적자가 필수의료 지원에 의해서 따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면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듯이 예비타당성 면제 등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원 방안이라든가 예타 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35개 지방의료원 공익적자 이것 올해 것을 보니까 1247억 원 이 정도 발생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책과 또 예타 면제를 추진한 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공공병원의 서비스 중의 상당 부분은 일반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지자채하고 나눠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출 효율화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서 지원 확대 방안을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

습니다.

또 다른, 제시한 예타 면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재정 당국이 좀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량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법안을 제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 과정에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예타 문제는 좀 더 협의해서 방안을 찾을 텐데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고민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아까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공공병원 확충 계획은 원래 전국 70개 병원을 확충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42개가 완료돼 있고 지방의료원 5개소 신축 그다음에 7개소 증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어차피 확대해 나가면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어쨌건 지금 이러한 것들이 원만하게 실행이 되려면 이번에 예산안이 어떻게 확보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1차 이행성적표를 보여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 이 부분들이 이번 합의·이행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급식을 지원받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에 20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서 신규 예산도 이번에 편성이 됐고, 그런데 이것이 신규뿐만 아니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예산 확보가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하고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를 같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는 아시다시피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사회복지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어나는데 이것을 칸막이를 치다 보니까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방안은 없는지 이것 포함해서 말씀해 주

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의 예산은 식약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복지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는 올해 처음 20개가 되었고요. 내년에 25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와 사회복지지원센터는 2026년경에 통합하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26년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고영인 위원 너무 먼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좀 더 앞당겨 보는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 추진계획서를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 텐데요.

사실 제가 장관님께 뒤통수 맞은 느낌인데요. 인사청문회 때 국제기구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한 감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때 장관님께서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기억합니다.

○최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국정감사 첫날 법안 발의를 할 테니 수용해 달라 하고 또 저의 제안에 장관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혜영 위원 저는 그래서 제 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이 아니고요 반대하는 입장인

신중검토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아니면 복지부 실무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임명을 위해 청문회 때 잠시 때우기 식이었는지 그리고 임명되니까 입장을 180도 바꾸신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또 납득하기 어려운 게 신중검토 의견에 뭐라고 했냐 하면 ‘국민 혼란이 예상되고 범위가 불명확하고 정보 파악이 어렵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 핑계지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장관님처럼 고액 소득을 받으면서 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잘사는 부자 국민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그리고 여기서 의견이 ‘범위가 불명확하고’ 해서 법안에 제가 제시를 했지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정보를 파악할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도 제도개선에 동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장관 임명되려고 동의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연금을 중복으로 탔다는 그것은 잘못 아신 거고요. 공무원 연금을 탄 거는 맞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갖고 별도 보고받은 건 없는데 아마 비과세 소득에 대해 가지고 소득을 하려면 저 같은 케이스도 있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부처랑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최혜영 위원 그러면 장관님, 제대로 지금 보고를 못 받으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러면 실무자들과 다시 검토하셔서 인청 때 장관님 답변하신 제도개선 관련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최혜영 위원 현재 코로나19 위중증·사망을 낮추기 위해서 먹는 치료제를 조기 투여하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최혜영 위원 특히나 지금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 국가가 먹는 치료제 투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월에

서 8월까지 투여율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여율이 늘어나면 먹는 치료제로 인한 이상사례도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최혜영 위원 이번 9월 기준으로 식약처에 보고된 이상사례를 보니까 한 6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현재 약사법에 의해서 정식 품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보상을 받거나 또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승인을 받은 의약품입니다. 이 의약품은 지금 현재 보상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피해구제 심사가 두 건이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건이 실제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예산안에 되어 있지도 않고요. 대안이 있으신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현재 관련 법령이 일단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같이 확보를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빨리 피해보상이 지급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이미 상담 접수, 피해 조사는 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만 빨리 된다면 저희가 기타 사항은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제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의원실마다 가서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예산 관련해서 보고 주시면 예결위 때 잘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알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장관님, 재난 발생시는 평상시에 잘해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복지부가 할 일들에 대해서 재난의료 총괄 계획 및 운영,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유관 부처 간 협력체계 유지 등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논의가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미애 위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평상시 역할에 대해서 매뉴얼은 있는데 그러면 평상시의 이런 역할에 충실하고 숙지하고 있으면 비상시에도 자동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평상시에 각 기관에 대한 점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정기적으로 하는 점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평상시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수시 점점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다음에 현재 여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복지부가 의료·심리·장례 지원을 전담하고 있고 지금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에 집중해야 될 때로 보여지는데요.

현장 대응 소방·경찰 인력은 물론이고 목격자와 일반 국민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상담 인력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예산은 이태원 사고 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전용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조달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국민적 슬픔과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다음 코로나 지금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미애 위원** 최근에 확진자 4만 명을 넘었고 위험도도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위중증 환자도 300명을 넘고 있어서 방역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7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판

단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됐지만 오늘 정기석 단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12월에는 언제든지, 이게 유행이 계속 도래했기 때문에 그 전에 유행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현재는 병상 가동률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이삼십 % 정도로 여유가 있지만 반드시 대유행에 대비해야 됩니다.

게다가 오늘부터 18세 이상 대상으로 2가 백신 예방접종 시작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난달 11일부터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접종률은 매우 낮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낮습니다.

○**김미애 위원** 18세 이상 4차 접종률이 17%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망자 비율 90%가 넘는 60대 이상 접종률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접종이 필요한 대상과 접종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께 설명을 구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미애 위원** 이에 대해서 복지부가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우선 어르신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협의체들과 협력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하고 그래서 접종률을 높이는 게 치명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게 독감 환자 수가 일주일 사이에 20% 넘게 증가했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증가세가 높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8월에 질병청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소송에서 패소했고 항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청장님,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김미애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질병청이 인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썼고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제가 볼 때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한 용역 결과가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법을 통과 안 해도 현 상태에서 소송을 하면 그 용역 결과대로 법원 실무에서는 판단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도, 청장님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한 1분만 좀 더 주시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도 의견을 드렸고, 복지부 담당자 보고를 보니까 그중의 하나가 우정사업본부가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방지 목적으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서 집배원이 소외계층 및 위기상황 의심 가구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집배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기존 업무에 일만 하나 더 주다 보니까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결위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백경란 청장님께 물을게요.

신현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해 가 보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고요.

기사에 보면 백 씨, 그러니까 백경란 청장님의 동생 같아요. 확인서에 사인한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동생분하고 통화한 적 있어

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기자분 접촉한 이후에 통화했습니다.

○김원이 위원 저 확인서 떼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인서에 보면 맨 밑에 보고자 백 뭐가 있고요 그 옆에 사인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확인서에 사인한 게 동생이 맞다고 그 동생분이 더팩트 기자에게 확인해 준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쓴 직무수행계획은 자기가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장님,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백경란 청장님은 지금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역 제출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즉 이해충돌 의혹을 사고 있는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제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우리가 줬어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걸 끝까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제출했습니다.

○김원이 위원 무슨 제출을 해요? 그것 위증이에요.

28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여야 만장일치의 국회 상임위 의결 사항이에요. 그런데 결국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내고 싶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8일 날, 곧 고발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의 누나 찬스가 나온 거예요. 백경란 질병청장님의 동생께서 누나 찬스를 이용해서 ‘마침 친누이는 2대 질병청장의 임무를 맡은 백경란 청장입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글을 써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확인서에는 아까처럼 사인을 한 거예요. 자기 사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직무수행계획에 한 것은 자기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 확인서에 사인한 것은 본인이고 그 사인의 책임은 당사자가 지는 겁니다.

아גיע요? 백경란 청장님 동생분 몇 살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백경란 청장님 동생분?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

○김원이 위원 나이도 몰라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질문하시는……

○**김원이 위원** 나이가 몇이나고요, 동생분 나이가.

그분도 이런 법적체계나……

보니까 경력이 화려해요. 서울대학교 화공과 나와 가지고 아이엠스테이션 대표이사도 하시고 아시아캐피탈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도 하고 씨유전자 대표도 하고 해서 자기가 쓴 확인서가 어떤 법적 지위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법인체를 운영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그것 없어집니까, 그 죄가?

청장님 지금이라도, 이미 백경란 청장님은 본인의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또 거기에 더해 동생분이 누나 찬스를 썼다는, ‘제 친누이는 2대 질병청장 임무를 맡은 백경란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백경란 청장님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이미 잃었지만 거기에 더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질병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가뜰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민적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에 백경란 청장님이 더해셔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퇴하세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우려가 아니라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우려의 단계가 넘어섰어요. 불신하고 있어요, 당신을. 백경란 질병청장을 우리 국회는 신뢰하지 않고 우리 국민은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더 이상 못 맡기겠어요! 그만두세요! 우려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확인서를 제출한 최초의 회의가, 디엔에이링크라고 하는 회사의 사외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가 첫 회의는 불발됐대요. 기사에 따르면……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발됐답니다. 그래서 불발된 회의가 언제 다시 열렸냐, 8월 26일이예요. 그날이 무슨 의미냐 하면 공교롭게 백경란 청장님이 재산 신고를 공개해서 관보에 공개가 돼서 그때부터 기사화가 됐던 날이예요, 8월 26일이. 맞지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만약에 잠깐이라도 백경란 청장의 동생분이 그런 사회적 책임감과 공적 윤리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그날이라도 자기 사외이사 진출 의결 안건을 취소했어야지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위원님, 그날 회의는……

○**김원이 위원** 유유상종입니까?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그날 회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았습니니다.

○**김원이 위원** 첫 회의는 안 됐고 8월 26일 날 됐대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사외이사 선임되지 않았고 회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충돌 관련해서 내역을 최대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작성한 그 확인서는 8월 3일 작성을 했는데 직무수행계획서는 당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른 제3자에 의해서 8월 10일에 작성돼서 제출되었다고 해서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원이 위원** 동생분도 사업을 하실 만큼 하신 분이예요. 제가 이력 간단하게 읽어드렸는데 보니까 동생분도 똑똑하신 분이요 자기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해 보신 분이예요. 그런 분이 확인서에 사인을 할 때는, 최종 확인서에 사인한 것이 그 사람이 지는……

보통 사실확인서 써 보면 맨 밑에 뭐라고 들어가느냐 하면요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특히 공적 서류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김원이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원이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춘숙** 예.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오늘 내년도 예산 전체회의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백경란 청장에 대한 자료 요구건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28일까지 자료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또 안건 중에 네 번째에 그런 안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사실은 청장님의 동생의 취업 문제건이, 저도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예단하고 그것을 또 청장이 다 알지는 못하는 부분을, 가족사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은 본인이 아닌데 그렇게 위원 신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 관련해서 그분을, 직접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다면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데 청장이 다 알지는 못하는 부분을 너무 가혹하게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의제에 맞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 위원** 본인의 과거 주식 거래가 지금 질병청장으로서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가 지난 국정감사 때 내내 시끄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적어도 제가 문제인 정부의 자문위원 하면서 했던 주식 거래 내용 전부를 내시라 그렇게 말씀을, 저의 경우는 요구한 자료가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 자료는 내시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해명해야 될 일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히 덮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커지실 거라고, 그렇게 하면 더 잘못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급기야 본인의 남동생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본인이 질병청장이 된 이후에 본인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본인의 누님은 2대 질병청장이라는 말까지 넣은 것을 본인이 부정하든 긍정하든 간에 나왔습니다.

직무수행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고 다음번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직무수행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청이 어떻게 어렵게, 코로나와 함께 얼마나 어렵게 됐는데 그래서 예산도 따로 부여하고 권한과 책임을 줬는데 이런 질병청장을 믿고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저는 행정부로서, 정당을 떠나 행정부로서 답변을 충분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국회의 기능은 저는 미비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두 분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현안질의를 하면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렸고요. 지금 오후에는 예산질의, 예산과 관련된 또 법안과 관련된 또 결의안과 관련된 대체토론 시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충분히 이 취지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장관님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국감 때도 질의했는데 또 하겠습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명치료에 반대하는 노인 비율이 약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의 수요를 감당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공급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노인복지관이 이 역할에 적합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법안을 내서 그게 통과됐고요. 현재 전국의 노인복지관 약 400개가 있고 전국 보건소 숫자보다 100개가 넘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등록기관으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이 긍정적인 답변 해 주셨지만 복지부 계획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노인복지관이 추가된 이후에 등록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것을 제대로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원폭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년 전 이맘때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제가 함께 합천복지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 요청한 내용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점이 있어서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원폭 피해자 진료보조비는 29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꼭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늘어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합천복지관뿐만 아니라 원폭피해자 협회의 직원들도 원폭피해자를 위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협회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장관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 되시면 장관님도 한번 다녀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보조비가 30년간 동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한번 이걸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 필요성, 증액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협회 직원들도 어차피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려면 협회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소록도 현장 시찰을 했는데요. 소록도병원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종합국정감사를 마치고 우리가 국립소록도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장까지 찾아가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일이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문제이고 정책 당사자들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직접 가서 보니까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일단 자원봉사회관과 해안보행로를 보수해야 되는 게 시급해 보였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록도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록도병원처럼 평소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현장이 참 많습니다. 장관님이 틈나는 대로 직접 이런 곳에, 원폭 피해자, 합천복지관이나 이런 소록도병원에 진짜…… 우리 한센병 병원, 피해자, 환자들의 역사가 담겨 있는 아주 슬픈 곳인데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내서 다녀와 보도록 하고요.

한센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능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별도 연구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예산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이 병원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그 발전방안에 따라 가지고 예산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정춘숙 저희가 위원들이 정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잦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소록도를 방문했구요. 소록도에서도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간 건 너무나 오랜 만이라고 말씀하셨고 소록도병원에 간…… 그러니까 인권침해의 현장에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인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사람이 다니는, 펜스가 지금 태풍으로 무너져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예요. 사실 그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꼭 세워서 가지고 확보하는 데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다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10·29 참사는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치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의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위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6만 1000개 축소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가 있었고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장관께서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12일에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가지고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수는 더 늘렸다. 그리고 예산은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공익형 활동형 일자리를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그거는 정부에 이번에 일자리 편성 방향,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보수가 높은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는 편성방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일자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의지와 능력이 되시면 일자리는 계속 제공할겠다는 원칙하에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 중입니다.

○서영석 위원 우려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공익형 일자리는 대기자가 9만 6000명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올해 예산보다도 훨씬 더 확대해서 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상병수당 2단계 사업을 내년에 하게 되는데, 1단계 사업을 시범사업을 추가해서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를 대상으로 3개 모형별로 지역별로 1개소씩 총 3개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애시당초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소득 하위 50%는 일용직, 특고, 자영업자 이렇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대기기간을 좀 짧게 하고 그래서 3일로 고정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게 모형별 지역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단계 시범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했고 2단계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기기간을 짧게 하거나 통일하거나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3일, 7일, 14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하지 말고 대기기간을 짧게 해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건보지사에서, 한 군데서만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좀 하중이 있고 그래서 기왕 있는 건보지사에서 모두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1단계, 2단계가 최저금액의 60% 증액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원래 ILO가 권고한 것은 소득의 66.6%였고요. 그리고 산재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평균임금의 60~7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급여의 최저한도를 상향시키거나 아니면 정률형 모형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검토의 영역에서 배제시키지 말고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정말로 본 사업을 최대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단계에서 좀 모델지역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도 모델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 예산에서 권익위하고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다 합의해 가지고 공공심야약국을 하기로 예산증액을 했는데 이게 정부가 약속한 약속을 2023년에 아무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것 하여튼 필요성을 추가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일단 재정당국한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식약처나 복지부 예산을 보니까 동일하거나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선 마약사범 수가 1만 6000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태에서 중독 치료자 치료보호를 위한 예산추계가 350명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게 아마 최근 추세가 한 연 300명이라서 350명인데, 350명으로 추계해서 반영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한 겁니다. 그 추세를 감안을 해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마약사범, 우리가 보통

할 때 마약사범 이렇게 해서 범죄로밖에 취급을 안 하는데 중독자 치료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식약처장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독재활치료센터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앞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권역별로 좀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중독자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한 지 3~7년 되고 나서 아무것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모니터링 인력도 두 명이 고정되어 가지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 만전을 기해서 실제로 통제 가능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마약류 관련해서 지금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그리고 청소년·청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모니터링 인력 증강, 데이터……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등에 관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 중인 좋은 이웃들 사업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부 예산을 마중물 삼아서 복지사업과 관련된 민간 재원을 적극 개발해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아주 모범적인 민관협력사업으로 알고 있고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가슴 아픈 사건들, 송파 세 모녀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 끊임없이 우리 정부

와 국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그대로 있고 이 끊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정부와 관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이 잘하고 있을 때는 거기를 잘 도와줘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이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난 수년간 정부가 과도하게 늘어난 국가부채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의 전반적 감축기조로 인해 갖고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일률적으로 10%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 감축기조는 저희가 이해하지만 약자 복지를 위한 사업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 맞춰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사업이 투자 대비, 예를 들면 예산 대비 한 8.5배에 가까운 정책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들이 주로, 민간자원 지원이 식사 지원, 생활 지원, 주거 지원, 의료·건강 지원, 교육·취업 지원, 기타 법률 상담 등 관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다 손 뻗을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 주고 있는데 이 예산 삭감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3고 시대에 앞으로 더 어려움이 취약계층에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장관님 꼭 사명감을 갖고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 공공심야약국의 의미는 1차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이것도 사회안전망을 형성하는 겁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몇 군데가 봤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보통 요즘 병원을 끼고 있는 약국들은 6시, 7시에 문을 닫고, 그래도 동네 약국이라고 해서 유동 인구가 많은 데는 약사님들이 전문인으로서의 그러한 피로감도 뒤로 제치고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 또 이런 약국들은 정말 국민의 건강을 살리고 국민이 응급할 때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새벽 1시까지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한 종류의 전문직 종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침 9시에 열어 갖고 새벽 1시까지, 2교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6개월 해서 또 지역 구민들의 반응도 좋은데 이것을 지금 전액 삭감하는 것은 너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태원 사고도 겪고, 아무리 관이나 지자체나 노력을 해도 항상 사건 사고는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 좀 더 적극행정, 실천행정, 실제적인 행정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고 또 이런 취약한 지역 또 그런 의원이나 약국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분들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긴축기조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문인들이 수익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약사회도 권장하고 권유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시면 국민의 건강은 어떻게 되며 그 전문직 약사님들의 자존감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내년엔 한 38억 정도 예산편성해 주시면, 작년에 6개월 했으니까 이제 1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사명감을 갖고 회복시켜 주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번 달에 보건의료단체장님 만났을 때 약사 회장님이 또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요, 재정당국과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개월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시범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 증액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예, 장관님, 적극 추진해 주시고 저희도 힘이 될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장관님, 23년 예산안을 보니까 9·2 노정합의에 의한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그리고 국공립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기초연구가 내년 6월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직종에 대한 기초연구 포함해서 실제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은 이미 2억 원을 들여서 컨설팅 용역은 마쳤고요. 그러면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우선 적정 인력기준 연구는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아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이것은 제가 하여튼 재정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적극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도 관련 예산이 국회 증액으로 10억 원이 반영됐고 그런데 올해는 아예 반영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국공립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도 다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됐고 그리고 노정합의로 해서 민간병원에 대한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병원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공립병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사업을 계속 하다가 민간병원의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두 사업을 통합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민간병원 시범사업 하고 있다고 해서 국공립병원의 인건비 지원사업을 없애 버리면 이게 아예 사업이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 사업도 심의과정에서 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병원 대상 시범사업도 이제 막 올해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5년 4월에 종료될 예정인데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예, 그래서 인력기준 연구비 10억 원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비 33억 원 그리고 교육전담간호사 102억 원 합쳐서 145억 원인데요. 보건의료인력 핵심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내년 예산안에서 이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 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 10개 사업에 1조 2400억 원 가량이 이관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관된 것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취약지 지원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자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다, 균특으로 이전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균특은 잘 아시다시피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지원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이 있는데 자율계정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사업……

○**강은미 위원** 예, 그건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국가 일반회계를 균특으로 이관하고 한 2~3년 있다가 추가적인 재정분권 없이 다시 또 사업만 지방사업으로 이양시켜서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균특이양인데 지역의 재정만 더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지방이전까지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특히 이번에 이양된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랑 다시 논의해서 일반회계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은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총사업비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당초에 800병상을 희망했는데 사업 적정성 과정에서 훨씬 축소된 1안, 2안이 논의 중인데요. 이번에 10월 29일 참사에서 보았듯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송합니다. 1분만……

검토하는 부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그저 동대문에 있는 1개 병원 정도로만 생각해서 서울에 있는 전체 병상 수로 보면 여기를 그렇게 늘리면 안 된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렇게 규모를 축소해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국가재난 상황이든 이번에 이 상황이든 봤을 때 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병원

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800병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2만 596병상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게 저도 알아봤는데 재정 당국에서 기능을 축소하려고 병상을 줄이는 건 아니고요. 자꾸만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규모 축소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겠는……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초라한 규모의 이름만 국가 중앙병원이 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훈식 위원**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꼭 해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뽑아 놓은 숫자는 39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 보면 대상자를 8000명 늘어난 11만 5000명 정도 해 났고요. 시간은 하루 평균 4.2시간 정도 이렇게 기준 잡아 놓은 겁니다. 평균 시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에 활동지원 서비스 부족에 대한 여러 문제를 지적했더니 장관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무제한으로 풀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국감에서 주로 말씀드렸던 적어도 우리 보건복지부가 출생의 우연성으로 생긴 불평등을 극복하는 의지는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 중의 핵심은 내가 원하지 않는 장애를 받은 아이들이 이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나라의 복지부가, 이 나라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조금 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이런 질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 정도로, 지금 4.2시간

돼 있어요, 시간도 좀 늘리고 저는 대상자도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39만에 비하면 11만 5000도 작은데, 그것도 하루를 데리고 있으면 4.2시간 밖에 지원 서비스를 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가 1만 5570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 명목, 할 것 다 하고 나면 2% 갖고 나머지 운영비로 써야 되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의 돌봄서비스 중에 수가가 비교적 높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수가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막 주셔도,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할 테니까…… 정책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할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훈식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도 수가 대비 한 10% 이상 정도는 차액소계가 있어야지 운영하고 다른 데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활동 수가도 한 1만 7000원 정도로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해 보면, 이게 얼마만큼 금액이 늘어나냐 봤더니 금액이 꽤 납니다, 이렇게 되면. 꽤 늘기는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하면, 제가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꽤 늘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부모급여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 들여오면서 단박에 1조 2500억 정도를 편성한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도 다른 토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한참, 한 반 정도도 안 되는 금액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해결해 볼 수 있는데 이것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늘리는 것도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감액 규정이 있는데, 시간 감경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완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나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했는데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예, 꼭 좀 늘려 주시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

립 근거를 2011년에 만들어서 아직 미설치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국감에 질의했어요.

왜 질의했냐?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느냐?’ 이랬더니 담당 기관에서 위에서 빼셨다고 했어요. 위가 기재부를 말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비루하더라고요, 복지위 하면서 기재위에서 빼면 위에서 빠진 것이 돼 버려서.

이것 다시 반드시 넣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훈식 위원 30억 정도 예산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니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설명을 잘해서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예, 받아 오십시오.

백경란 청장님, 오늘 보도 난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바이오기업의 사외이사가 된 것 아닙니까? 거기의 평균 연봉은 1억 80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사외이사 선임되지 않았 습니다만……

○강훈식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그리고 연봉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외이사는.

○강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 같습니까?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죄송합니다.

○강훈식 위원 죄송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1분만 주세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질병청이 얼마나 부담이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런 논란이. 내 누나가 2대 질병청장이라고 하는 직무수행 본인이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게 기사로 나요. 이런 보도가 나요. 공직자의 책임감은 그런 데서 느끼는 겁니다.

‘연봉을 안 받았어요. 취업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 동생으로 인해서 이런 논란이 나서 질병청 직원들께 부끄럽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질병청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몇

십 개씩 나오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깨끗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심려와 우려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 편성된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의 2단계인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사업으로 1단계 선도사업 수행으로 개발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비록 시범사업이었다 할지라도 여러 제도적 미비점을 노출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기존에 제공되던 각종 돌봄·요양 서비스와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보건의료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주거, 일자리, 일부 의료건강서비스가 결합한 구조라 보건의료 쪽으로만 보면 방문 진료 정도를 추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미 재정으로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 중복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혼란과 재정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 서비스나 기존 복지제도하고 중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가지고 이행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지금 재가의료서비스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쪽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사업모델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은 사업대상 선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과 달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예산안에 추산하고 있는 사업 지원 대상자는 현재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약 44만 명으로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기준을 정교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실제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 지원대상을 효과적으로 선정·발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 사전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뿐만 아니라 지자체 의견수렴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업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의 핵심 모델은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의료공급 구조에서 의사의 방문진료가 가능할지 우려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원의나 봉직의가 방문의료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정책 수단이 있는지, 의사들이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방문의료를 전담할 의사 인력을 새로 양성해야 할지, 방문의료를 위한 지원과 인프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우 지역 자율 시행에 따라 재가의료서비스 부족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음에도 2023년 사업계획에서도 보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제시된 재가의료서비스 부족 등 평가 의견을 신규 사업계획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낙 위원님께서 지금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새로운 모델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장관님, 아까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5.4%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혜숙 위원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활동지원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힘든 환자들을 케어하고 나면 병원비가 더 든답니다. 그래서 기재부 출신이시니까 대폭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후배들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혜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을 지난번에 제가 시설개선편리랑 이것 삭감된 것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증액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혜숙 위원 시설이 나쁘면 아이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안 그래도 저출생인데 이것 꼭 증액을 하시기를 바라구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공심야약국 이걸 왜 시범사업만 합니까? 실제 이것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러니까 그 취지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본사업을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했으면 이제 본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태워야지 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6개월로 좀 짧다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6개월을 했는데 또……

○전혜숙 위원 본사업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혜숙 위원 설명 필요 없고요. 괜히 쓸데없이 공공심야약국 없다고 하면서 화상투약기 해야 된다, 민간의료 쪽하고 이상한 그런 활동 하지 마시고요. 이것 공공심야약국을 살려 놓으면 화상투약 같은 것 필요 없어요. 약사에 의해서 약을 투약하도록 해야 국민이 안전한 투약을 받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민간 업체하고 되

어 있다는 건 오해시고요.

○전혜숙 위원 예산은 서면질의를 해서 제가 증액을 낼 테니까 그것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장관님, 지금 우리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로 치닫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우리가 지금 600만에서 9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의 43%가 국민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더라도 기초연금을 받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좀 편성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직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전혜숙 위원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혜숙 위원 70대 이 노인들이 다 전쟁 전후 세대고요. 그때 너무 가난해서 배우지를 못했구요. 정규직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 노인빈곤율 대한민국 1위, 노인자살률 1위 시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뭘 시니어 인턴십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60대의 능력 있는 사람들에 지원하는 돈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지원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계급여라는 게 보충급여 성격이 있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했을 때 소득 역전의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전혜숙 위원 소득 역전은 잠금장치를 좀 해 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같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5년까지는 봐 주는 그걸 해 봤고요. 장관님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60만 8000개에서 54만 7000개로 6만 1000개 줄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 드렸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전혜숙 위원 이것 원위치 시키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중액하도록 지금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계속 저한테 와서 이것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도 많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이런 것 방치하면 좋은 나라가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저도 이야기하겠지만 장관님께서도, 오늘 추경호 장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노인들의 치매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깎였어요.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이 34.5% 삭감되고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43.8% 삭감됐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프로그램이 그 특수성 때문에 거기의 운영이 잘 안됐다고 해서 이걸 예산 깎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 살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집행이 잘 되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님, 아까 우리 강훈식 간사님이 질의할 때 사외이사……

조금만 더 주세요, 30초.

사외이사 봉급, 연봉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죄송합니다.

○**전혜숙 위원** 사외이사도 혜택을 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 이익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연봉이라고 했더니 ‘연봉 안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죄송합니다.

○**전혜숙 위원** 사외이사 공짜로 합니까? 어떤 경우로든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연봉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외이사도 선임되지 않았습니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임되지 않아도 그분이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선임되려고 썼다는 것 자체를 사과를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그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 장관님, 최근 마약류 사범 증가에 대해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런데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로 매칭이 되고 있는데, 마약중독환자가 의료기관에 오면 치료보호 기간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는데 이게 치료보호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진료가 끝나야지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이 병원장님이시라면 이 마약중독환자 치료하겠습니까? 진료비가 묶여 있는데 어떻게 진료를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경영상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최연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치료하는 병원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시스템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고쳐 주시고요. 그리고 마약중독환자의 치료에는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별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 인센티브도 마련해 주시고, 특히 국립정신병원은 진료비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마약중독 치료를 담당하겠다고 지금 자원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면? 이 시스템을 고쳐 주시고요.

재정도 치료보호기관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재원과 국립정신병원 별도 예산, 재정지원을 하는 예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진료비……

○**최연숙 위원**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을 5 대 5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거는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조금 차별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최연숙 위원** 아니지요. 지자체에 차별화를 둔다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차별, 물론 재정이 열악한 곳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거지요. 그거는 논의를 해서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질병관리청장님, 제가 중감 때 우리나라 국가 방역정보시스템 통합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말씀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래서 어떤 감염병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청에서 지금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데요, 여기 통합 대상에 에이즈지원시스템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이 있다고 보는데 업무 효율을 가져오는 거 맞지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맞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예산은 한 12억 6000 정도가 증액이 필요한데 지금 각각으로, 에이즈지원시스템은 보면 3억 1000만 원, 결핵환자 신고관리시스템은 6억 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3억 정도만 예산을 증액을 시키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을 합하는 구축사업,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것을 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적인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아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예.

장관님, 보건복지부는 19년부터 20년까지 한시사업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21년 노정합의문에도 이 사업이 포함돼 있었

고요.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부터 간호사의 사직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이 지방의료원이라든지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의료기관이 대다수라서 이 병원들의 간호사 수급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본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끊어진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중단되지 않도록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했으면 결과가 좋으면 본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연숙 위원** 그리고 중환자 전담간호사도 중수본에서 중환자실, 물론 성인·소아·신생아가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전담간호사 양성사업을 3년간 해 왔는데요. 22년 말 중수본 운영이 종료되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요. 중환자 발생 위험도 있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중단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3년간 전체 병원의 18.3%, 간호사는 7.2%만 교육을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병원도 굉장히,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시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내년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제가 중단된 사유를 보고받지 못했는데 세밀히 살펴보고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연숙 위원** 식약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해 놔는데 이것은 경기도 지역의 한해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해 놔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마약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저희도 증액을 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연숙 위원 이것을 예산을 늘려서, 지금 마약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약사의 복약 지도 시에도 처리방법에 대해서 고지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윤 위원 장관님,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금융당국이 10월 27일 날 대책회의를 한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윤 위원 그래서 그때 그 대책 중의 하나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기금이. 그래서 요청받으신 바 있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는 아직까지 직접 요청을 받은 건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최종윤 위원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금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종윤 위원 이 P-CBO 증권이 사실 우량증권이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증권인데 이런 것 속에서 이번에 신보가 5400억 정도를 발행했는데 1400억 정도가 소진이 안 됐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김진태

강원지사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레고랜드 사태를 발생시키고 그걸로 채권시장이 위기가 오다 보니까 이게 우량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5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금을 유동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연기금이 사실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대책 중의 하나로 소진해 줬으면, 사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독려를 한 거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동안에도 우리가 여태까지 재정위기나 금융위기가 왔을 때 대체적으로 많은 매입을 통해서 국가정책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재정위기 때라든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2조 원 안팎의 이런 증권들을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한 정치인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야기된 채권위기 시장인데다가 그게 우량증권인데 지금 고위험 자산이 돼 버렸어요, 고위험 상품이 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국민연금이 매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거든요.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민연금이 이것을 매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정부 당국자로서 말하는 데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국민연금의 운용지침을 보면 수익성의 원칙도 있고 안정성의 원칙 또 공공성의 원칙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한번 금융당국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국민연금공단하고도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운용원칙이 있잖아요. 사실 국가 경제라든지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파악하고 나서 기금을 지출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종윤 위원 여기에 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매입을 할 때 한번 살펴보셔서 어떤 판단으로 해야 되는지, 왜 그런지 작년에도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안 좋았어요, 연금이. 상반기에도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다른……

○최종윤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위험자산이 돼 버린 것들을, 다만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기금운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한번 살펴보셔서, 저는 매입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매입을 하더라도

그 영향이나 평가를 사전에 잘 검토하시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종윤 위원 그리고 장관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윤 위원 나름대로 이게 지금 97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이미 전년에 국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종윤 위원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법적 근거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3자 전송요구권은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도 개정안을 만들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안전하게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실증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민간한테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지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에 37억 5000 그리고 지역 중심 마이데이터 기술생태계 실증에 6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저는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더 안전한 기술장치 그리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실증사업을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이 제출되어 있고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가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법 제도로 보호를 하면서 또 우리 보건의료산업이 굉장히 우리나라 성장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육성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최종윤 위원 아, 저는 그 취지와 방향은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근거와 보호장치가 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증사업을 하면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요.

1분만 더 주실래요?

그것은 다시 한번 관계자분들과하고 협의하셔서, 이 예산 삭감과 관련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자세하게.

○최종윤 위원 그리고 마음안심버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트라우마.

○최종윤 위원 이번에 우리가 10·29 참사를 통해서 각 분향소에도 서울에서 5대도 운영했고, 이게 효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장관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45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빠졌어요, 지금. 21억을 했다가 내년 예산에 빠졌거든요, 설명도 없고.

이거 좀 살피셔서 장관님 한번, 반드시 저는 예산 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트라우마 특성상 또 직접 찾아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 장관님, 윤석열 정부 표방하는 계약자 복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 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포기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종성 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이거 포기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다 잘라 가지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연 접수된 거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것들, 직접 찾아와서 아이 상태 확인하고 병원 데리고 들어가서 진료·검사해 주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굉장히 좋은 반응들의 사연이 오는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재활병원 공급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이종성 위원 서울재활병원 예로 들면 지금 대기자가 1139명이예요. 소아 치료실 2년, 청소년 치료실 3년 대기예요.

전 정부에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10개 재활병

원 운영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이제 2개 병원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그런데 올해 22년도에 운영비 한번 주고 나서 내년 예산에서 운영비를 다 삭감해 버렸다는 거예요. 당초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할 때 필수 인력 인건비 지원하겠다고 공고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1년 딱 주고 내년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다 없애 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국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재정당국에서 말하고 있는 시범 수가 적용만으로는 이 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인건비 예산 증액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 이걸 협의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예요. 아동, 장애 아동에 대한 기본 재활의료는 가장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국감에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항목, 편의시설 관련 예산 세목이 없어요, 지금 예산서에.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에다 갖다 꽂아 댔느냐 하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다 꽂아 댔어요, 세목조차도 없어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겨우 장애인개발원하고 한두 개 단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원 예산들도 지금 6년째 동결돼 있고 그리고 법상으로 지금 매년 표본 실태조사 하도록 돼 있는데 표본 실태조사 예산을 편성한 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단체에다 그냥 떠넘겨 가지고, 단체의 고유 사업을 다 내팽개치고 실태조사 하라는 식으로. 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고.

지금 정신장애인들이 부분, 최근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전 국민 트라우마도 있고 자살률 1위라는 그런 불명예 통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강화가 필수적으로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계속 삭감이 되고 있어요, 건강정책국 예산이.

정신건강 증진 시설 확충 예산 29% 삭감, 증진

시설 운영 지원 3.4% 삭감, 당사자 지원 6.8% 삭감, 정신건강하고 관련된 예산들을 모든 항목에서 다 삭감을 이렇게 해 놓고…… 정신응급환자 전달 대응 지원 그다음에 위기개입팀 설치, 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종성 위원 그렇게 하고.

장애인 구강 진료 이것도 지금 전체 권역 중에서 4개 권역이 구강진료센터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구강진료센터가 아직 설치가 돼 있지 않거든요. 장애인들 구강진료센터가 왜 필요한지 장관님 이해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종성 위원 장애인들 구강, 치과 치료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이종성 위원 비장애인들보다 한 10배 정도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든가 발달장애인들 간단한 충치 하나 빼는 데도 전신마취를 시키고 빼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강진료센터를 조금 확대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국정과제로 포함시켜 줘야 해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 인건비는 다 동결해 놓고, 기본 예산은 다 동결해 놓고 지금 1개소 확대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수준인데 이것도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장관님, 그것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님 지적 아쁘게 받아들이고요. 여러 사업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내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우선순위를 우선 좀 보고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장관님, 예산 질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지는 하지만 오전 현안 때 제가 여쭙았던 것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시 38분 이후에 0시 56분까지 2시간여 이상 후에 장관께서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장관에게 직접 보고가 그렇게 늦게 됐다는 것하고 0시 16분에 대통령 지시 전화를 받고부터 0시 56분까지의 상황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적이라면 이게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도대체 상황이 어떤지 보고를 왜 바로 안 했나 이렇게 바로 물어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그냥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일선 파출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긴장해서 바짝 쥔 부분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한 부분도 이렇게 긴장해서 적극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복지부에서도 오늘 한 일주일 지난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 상황이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었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사실 우리한테 보고돼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장관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내부 보고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개선방안을 만들고……

○**김민석 위원** 전체적으로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민석 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금 이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감 때 강선우 위원님도 질의했었지요. 저도 질의했던 건데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걸 좀 챙겨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민석 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전주의, 그때 국감 때도 여쭙았는데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짚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시다, 지시는 했는데.

○**김민석 위원** 보고가 아니라 그때 질의를 했고 짚어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절차상 어려움의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조금 나서서 조율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별

로 진도가 안 나간 모양이네요? 그 부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마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석 위원** 그 부분 확인해서 그 부분하고 이번에 예산 전액 삭감된 부분에다가 내년 예산·충남권까지 포함한다면 그냥 삭감된 17억 4000 복원이 아니라 기존 병원 1개소당 평균 우리가 지원했던 비용까지를 포함한 근 25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워낙 질의가 많이 있으셨고 지금 장관님께서도 공감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민석 위원**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6만 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너무 많이 지적이 됐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 달 27만 원 수당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너무 그야말로 이론적 접근을 할 대목이 아니다, 이것은 현장의 살아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민석 위원** 그리고 지금 바이오 관련 예산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확인이 안 되는데, 2022년에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후속 사업으로 원래는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지정이 진행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보지가 한 다섯 군데 있는데 그게 아마 선정이 안 되고 아마 그래서 예산 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민석 위원**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산되거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이게 아마 지난번 국감 때인가 그 전에 제가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서 혹시 정부에서 전쟁 얘기하는 데 과연 전쟁 준비 회의를 복지부에서 같이 한 바 있느냐 이걸 제가 한번 여쭙본 바가 있을 텐데, 지금 시중에서는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마약과의 전쟁을 수사 측면에서만 접근하면서 실제로 경찰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난번 국감 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정말 마약과의 전쟁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예산들이 굉장히 미흡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것도 대책 고민하기 전에 만든 예산안인데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와 재활·복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 장관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정부의 의지고 또 중요성 또 이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어떤 시작이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여야 할 것 없이 의원실에다가 요청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라. 뭐 예비비도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번 예산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다음 공공형 일자리 부분을 지난번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오늘 대한노인회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아까 중식 시간을 통해서 가졌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노인회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었고 또 예산 또한 늘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공공형 일자리가 6만 1000개 줄어든 데 대한 그런 거부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상임위 할 때 이야기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형 일자리 6만 1000개 늘리는 데 재원이 한 920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적극 협의 중입니다.

○강기윤 위원 그다음에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우리 여야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가를 조정하는 문제 또 필수 의료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인턴이나 전공의 배치를 좀 균형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면서도 거기에 정말로 필요한 뇌질환 관련된 신경과에 대한 티오가 없어요. 이런 것 지정만 하고 나서는, 지정만 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편중돼 있는 부분을 보면 인턴 그다음에 전공의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저게 여러 가지 베이스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런 부분들의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이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기윤 위원 그다음 어린이집, 제가 가정이나 민간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과 여러 가지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차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국공립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공공형 같은 경우는 보육료에 산입해서 하는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부분은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더 좋겠지요,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지금 시도의 교육청에 있는 교육감님들이 현재 유치원에 있는 5세 아동들을 보육료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알고

계시는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신문 보도에서 봤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런 쪽의 5세 아이들은…… 이게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무상교육이 되는데요, 차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기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근본적으로 유보 통합이 필요하고요. 이제 교육부총리께서 정식 업무를 시작하시게 되면 제가 직접 한번 소통을 해서 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질병청장님.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강기윤 위원 지난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사실은 36.9%가 감소를 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코로나 백신 관련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래요? 주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요?

주사,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대한.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백신 접종 예산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6페이지에 보니까 이상 반응 관리에서 362억에서 276억 원으로 한 24% 정도가……

한 1분만……

24% 정도가, 이상 반응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한 24%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인과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부분도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인과성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상반응 관리가 그와 같은 백신 피해보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몰라도 이와 같은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노력, 질병청의 노력이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

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보상 관련해서 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향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이, 접종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저희가 접종 이상반응을 피해보상 하는 대상 수 자체는 조금 더 높여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더 지원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촉촉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보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이게 두터운 사회안전망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한 국공립 시설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는데 다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도 목표에 들어가 있는데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38% 정도 또 감액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 감액을 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마 사업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일단 시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남인순 위원 집행을 얘기를 계속하셨는데요. 보통 집행률이 저조하면 집행을 제고하는 방향을 세워야지 예산을 깎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게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행률이 낮을 수가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예산…… 집행률 제고하는 것이 행정의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깎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산을 단년도 예산은 깎았는데, 그것을 약간 스프레드(spread)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저는 그것 이해 안 가고 다시 다 원복귀를 하시고 이걸 어떻게 집행률을 높일 것인가 또 지자체 부담률 같은 것을 좀 낮춰 주고 국가 부담률을 높인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약자 복지, 약자 복지 얘기를 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급여 인상한 것은 긍정적이라 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1개 생활지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것이 편성된 부분인데, 한시적 지원이 5000억,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것 무조건 다 긴급복지 사업 예산을 계속 저는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 다시 다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긴급복지의 단가는 생계급여 수준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지원 기간도 확대하고 나름대로 제도적으로는 좀 보강을 했습니다.

○남인순 위원 저소득층 긴급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대한노인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문제요, 5.1% 감액을 했는데 지원단가가 지금 현재 204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215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약 35억 정도 증액할 필요성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게 감액…… 작년에 일시적으로 올랐던 게 에너지 가격의 상승 때문에 올랐는데 내년도에도 에너지 가격은 상당 부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여러 번 NMC에 대한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비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병상을 해야 그나마 필수·중증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안이 496이고 2안이 596병상인데 어떻게 될 것

갑습니까, 병상 부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그……

○남인순 위원 최소 2안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800을 축소하는 것도 문제인데 1안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최소한 2안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임상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타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병상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최소 정말 800병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도 2안, 596병상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계비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추진비 15억 7500만 원 미반영됐습니다. 이것 반영하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것은……

○남인순 위원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설계 단계부터 감리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별도……

○남인순 위원 미반영됐으니까 이것 반영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부분 해서 100%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시설보다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100% 준수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다음에 부모급여를 확대하면서 영아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0~2세를 반별로 지원하는 것, 반별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선 0세부터 시작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럴 경우에 0세 반부터 하면 약 433억 원 정도 증액을 하면 반별로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1분만……

그것 검토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그리고 시간제보육료 지원 예산 부분도 지금 어린이집의 기능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조건 퇴출되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제 보육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0세 반부터 일단 시간제보육을 할 경우에도 약 93억 정도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적극 반응을 위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그리고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이것도 매년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90억 해야 그나마 겸직수당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 혁신펀드 100억 용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서면으로 냈으니까 이것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이 부분은 지금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꼭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남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아까 강은미 위원님도 그렇고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수 축소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자료 요청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예, 잠깐……

○**신현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관님, 오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모바일 상황실 자료 제출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게……

○**신현영 위원**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개인정보를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신현영 위원** 개인정보 제외한 일체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바로 제출되도록, 오늘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긴급 재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은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장관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춘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대체토론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률안, 결의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01항까지의 법률안 및 결의안은 소관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202항 및 제203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들과 소위원들께서는 심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9) **철회** **동의의 건**

○**위원장 정춘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4항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을 발의하신 김병욱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터 법안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3159호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의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5.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17시47분)

○위원장 정춘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5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증과 상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등의 사유로 백경란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 위원 질병청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특히 야당 위원들께서 주식 관련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내용인즉슨 본인에 의하면, 청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1차 자료를 냈고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니까 27일까지 여러 가지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실히 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알아본 쪽으로는 자기는 2차 자료를 나름대로 의원님실에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자료를 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요 자료 요구에 상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각자 위원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우리가 약정이 됐다 하더라도 본인의 노력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미흡한 게 있으면 본인한테 또다시 이야기해서 또 다시 확답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또다시 확산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또 질병청장

이 여러 가지 답변 과정이나 보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질병청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쓴 부분도 있고, 또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시점인지라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 위원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K-방역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질병청입니다. 그런 질병청이 좀 더 뿌듯하고 좀 더 정정당당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도 국민들에게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말 지치도록 모든 위원들이 우리 스스로가 질병관리청장의 땀땀함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요구하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끝내 거부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그리고 14조에 의거 고발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정부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보다 더 공적인 자리에 대한 책임감과 감수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약속해 왔고 지켜 오려고 했던 과정들을 함께하신 많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저는 합의된 데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두 분 간사님들의 각각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감 때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정감사 중에 요구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의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의 205항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백경란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는 이 안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종성 위원 당사자 소명 절차라도 취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춘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따로 당사자의 특별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바들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다시 한번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사일정 제205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증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등의 사유로 백경란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발하기로 한 증인에 대한 고발장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 기 윤	강 선 우	강 은 미	강 훈 식
고 영 인	김 미 애	김 민 석	김 원 이

남 인 순	백 중 현	서 영 석	서 정 숙
신 현 영	이 종 성	인 재 근	전 혜 숙
정 춘 숙	조 명 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중 윤	최 혜 영	한 정 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진	선	희
전 문 위 원	최	선	영
전 문 위 원	상	지	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	관	조	규	홍
제 2 차 관		박	민	수
사회복지정책실장		전	병	왕
인 구 정 책 실 장		최	중	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정	윤	순
정 책 기 획 관		정	경	실
노인정책관직무대리		이	윤	신
보 육 정 책 관		배	금	주
보건 의료 정 책 관		이	형	훈
공공보건정책관		박		향
정신건강정책관		곽	숙	영
글로벌백신허브화		김	현	준
추진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장	오	유	경
기 획 조 정 관		김	유	미

질병관리청

청	장	백	경	란
기 획 조 정 관		양	동	교
의료안전예방국장		임	을	기

【보고사항】

○의안 회부

임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7. 황보승희·윤두현·박성민·백중현·안병길·조경태·조해진·이채익·김용판·이양수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7. 최혜영·김원이·김정호·박찬대·송재호·양향자·김홍걸·윤미향·윤영덕·인재근·정춘숙·정태호·최기상·홍영표·양이원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8일 회부됨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8. 강기윤·이채익·박성중·윤상현·서범수·윤영석·박대출·임병헌·김선교·김용관·구자근 의원 발의)

10월 19일 회부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1. 서정숙·권은희·박덕흠·박성민·구자근·최연숙·최영희·최재형·박대수·김미애 의원 발의)

10월 24일 회부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4. 박광온·김영배·이원욱·김철민·전용기·송갑석·민병덕·김주영·윤영찬·임호선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4. 김민석·강득구·강선우·고영인·김수홍·양정숙·이동주·이은주·임호선·최종윤·최혜영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4. 임호선·박찬대·백혜련·오영환·윤호중·이장섭·이정문·이학영·전용기·최기상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4. 정춘숙·윤미향·최혜영·고영인·김상희·남인순·서영석·전혜숙·김정호·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25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민홍철·김희재·강민정·박상혁·허영·김정호·임호선·김두관·한정애·전재수·이학영 의원 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김홍걸·김성주·김승남·민병덕·민형배·설훈·양정숙·양정숙·양향자·오영환·윤준병·이원욱·이정문·조오섭·최혜영·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6일 회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김민석·강득구·강선우·고영인·김성주·김수홍·문진석·박정·신동근·

양정숙·이은주·정춘숙·조웅천·최종윤·최혜영·홍정민 의원 발의)

10월 27일 회부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윤준병·김홍걸·오영환·한병도·안규백·이용선·김태년·고영인·신정훈·양정숙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8. 이명수·구자근·金炳旭·김희곤·박성민·서일준·엄태영·유경준·전혜숙·조명희·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31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이용빈·강득구·김민기·김병욱·김성환·김원이·김주영·김홍걸·문진석·민병덕·민형배·서영교·서영석·안규백·이병훈·이원욱·이형석·장경태·조승래·조오섭·한병도·홍정민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유기홍·강득구·강민정·김홍걸·문정복·서동용·양정숙·윤영찬·조승래·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 이종성·박덕흠·박성민·백종현·서일준·전봉민·정동만·조경태·조명희·최승재 의원 발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 이종성·강기윤·박대수·박덕흠·백종현·서일준·이명수·이인선·전봉민·정동만·조명희·최승재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 이종성·강기윤·박대수·박덕흠·박성민·백종현·서일준·정동만·조명희·최승재·최영희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 이종성·강기윤·박대수·박덕흠·박성민·백종현·전봉민·정동만·조명희·최승재·최영희 의원 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 이종성·최영희·박성민·강기윤·박대수·전봉민·정동만·조명희·최승재·백종현·서일준·박덕흠 의원 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 이종성·최영희·박성민·강기윤·박대수·전봉민·정동만·조명희·최승재·백종현·서일준·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2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 한정애·강민정·강은미·김정호·문진석·서영석·송옥주·윤미향·이성만·장철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 강은미·김홍걸·류호정·배진교·심상정·양정숙·윤미향·윤후덕·이은주·장혜영 의원 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 한정애·강민정·강은미·김상희·김정호·문진석·민홍철·서영석·송옥주·윤미향·이성만·이원욱·장철민·최기상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 인재근·남인순·김승남·서영석·최혜영·최종윤·김한정·이장섭·강준현·양정숙·소병훈 의원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1. 2. 정부 제출)

이상 5건 11월 3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 강은미·김홍걸·남인순·류호정·배진교·심상정·양정숙·윤후덕·이은주·장혜영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 강은미·김홍걸·남인순·류호정·배진교·심상정·양정숙·윤후덕·이은주·장혜영 의원 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 김미애·성일종·최승재·이채익·양금희·권명호·金炳旭·조은희·서병수·

한무경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 조경태·윤재갑·박성민·하영제·김선교·서정숙·조명희·백종현·정경희·김용판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7. 주호영·강기윤·강대식·강민국·구자근·권명호·권성동·권영세·권은희·김기현·김도읍·김미애·金炳旭·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영선·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웅·김정재·김태호·김학용·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류성걸·박대수·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중·박수영·박정하·박진·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현·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원식·안병길·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상범·유의동·윤두현·윤상현·윤영석·윤재욱·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달곤·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용·이용호·이인선·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채익·이철규·이태규·이현승·임병헌·임이자·장동혁·장제원·전봉민·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우택·정운천·정점식·정진석·정찬민·정희용·조경태·조명희·조수진·조은희·조해진·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춘식·최형두·추경호·태영호·하영제·하태경·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문표·홍석준·황보승희 의원 발의)

10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윤준병·어기구·양정숙·이정문·오영환·민병덕·김철민·이수진(비)·김수홍·신정훈·민형배 의원 발의)

11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 송갑석·강득구·기동민·김경만·

김승남 · 김종민 · 도종환 · 문진석 · 민형배 ·
박광온 · 박정 · 소병훈 · 신영대 · 양향자 ·
윤관석 · 윤영덕 · 이병훈 · 이성만 · 이용빈 ·
이장섭 · 이학영 · 이형석 · 조오섭 · 주철현 ·
최종윤 의원 발의)

11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안 철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2. 7. 21. 인재근 · 서영석 · 이장섭 · 김한정 ·
최혜영 · 소병훈 · 최종윤 · 양정숙 · 김승남 ·
고영인 · 강준현 · 남인순 의원 발의)

11월 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예비심사기간 통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2. 9. 2.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이
11월 7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